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8년 12월 26일

연구기관명 :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협회장 송형길)

책임연구원 : 김철진 광신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교수

연구원 : 김동일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사무국장

 김나예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윤혜향 시민사회교육연구소 대표

 김소정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부위원장

보조연구원 : 김민정 고구려대학교 다문화복지과 겸임교수

 김혜리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외래교수

 김은하 광신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본 보고서는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가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수탁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광주광역시의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범위 및 방법	3
II.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이론 고찰	5
1. 평생교육전문인력: 평생교육사	7
2. 평생교육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16
3. 지방자치단체 조례	24
4. 국내·외 사례	31
III. 평생교육사 고용 현황 조사 및 분석	41
1. 총괄사항	43
2. 평생교육사 재직·배치 현황	45
3. 광주광역시 현황분석	57
IV. 평생교육사 고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59
1. 평생교육사 지위 및 의무 배치	61
2. 평생교육사 고용정책 동향과 직렬화 추진	64
3. 평생교육사 지위향상 및 의무배치를 위한 정책 제안	68
V. 결론 및 시사점	73
1. 논의	75
2. 제언	78

참고문헌 84

부록 87

표 차례

〈표 1〉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17
〈표 2〉 평생교육법제의 변화과정상의 특성과 한계	18
〈표 3〉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제14조의2 내용	19
〈표 4〉 공공영역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및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20
〈표 5〉 2017년 개최된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포럼 또는 공청회 내용	22
〈표 6〉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5
〈표 7〉 시·도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관련 특성	25
〈표 8〉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배치 등 및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규정 여부 ..	26
〈표 9〉 시·군·구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평생교육센터의 장 자격 기준	27
〈표 10〉 교육감의 임무와 관련한 평생교육법상의 규정 내용	28
〈표 11〉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내용 분석	29
〈표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및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사 채용(배치) 현황	36
〈표 13〉 서울특별시 신설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8
〈표 14〉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사 배치 사례	39
〈표 15〉 공공영역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및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46
〈표 16〉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현황	47
〈표 17〉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충족 기관 현황	47
〈표 18〉 광주광역시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고용현황	48
〈표 19〉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고용 현황	49
〈표 20〉 기관유형별 평생교육 기관수	50
〈표 21〉 공공기관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주요 특성	52
〈표 2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기본 현황	54
〈표 2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기본 현황	55

<표 24>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63
<표 25>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관련 개정안(신설)	67
<표 2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연차별 조성 제안	70
<표 27>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제안	70
<표 28> 민간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제안	71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방법의 구성	4
[그림 2] 평생교육사의 직무	7
[그림 3]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자 현황	9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1.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평생교육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 제고,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의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1999년에 평생교육법(법률 제6003호, 1999.8.30.) 제정과 함께 제도적 정비로 평생학습 구축 마련.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확충으로 인한 평생학습참여 비율(2004년 17% → 2017년 34.4%) 증가하였음.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 비해 질적인 측면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요구됨

-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의 필요성
 - 평생교육법 제26조의 2에 의해 평생교육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 배치로 고용 안정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배우고자 하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사의 전문화가 시급히 요청되어 그 체계적 지원과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함
 - 평생교육사 고용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고용의 직렬화가 필요함
 - 평생교육사 전담 공무원 직렬화를 신설하여 자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보다 현실적인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이루고자 함
 - 더욱이 평생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와 복지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다

루어지고 있으며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기획·조정
을 위한 것임

- 성인들의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재훈련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들의 직
업능력인정체제 개발과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오늘날 각 국가는 평생학습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목표가 되고 있음. 이러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교육사의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
임. 그러므로 평생교육사의 고용 직렬화는 주요 관건이 됨
-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론
고찰과 현황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조사 및 검토 분석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사의 대안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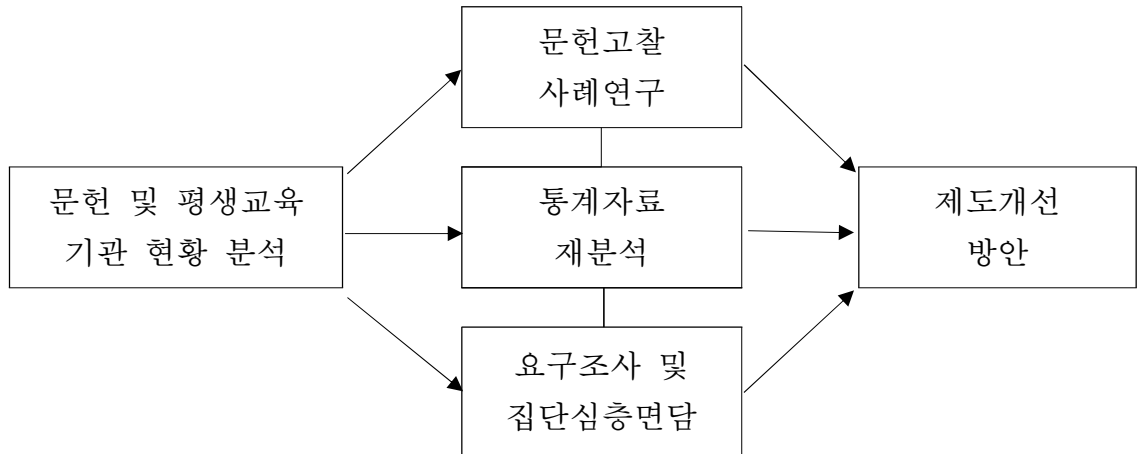
- 평생교육기관 및 기관설립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고용형태 조사 및 분석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향 및 적정 운영방안 제시
-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 직렬화 조사를 토대로 진단하고 이에 선행하여 공공부문의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여부 검토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 및 기관설립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조례 제·개정 제안

□ 기대효과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사 고용의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 활용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사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적용 강화 방안 제시
-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 직렬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사 고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2) 연구 방법

□ 연구방법의 구성



[그림 1] 연구방법의 구성

□ 광주광역시 자료수집 조사 후 타 시·도 사례 및 해외 사례 비교 연구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 및 기관설립 평생학습관의 고용형태에 대한 자료분석
-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사례조사 수집 및 분석
- 해외 사례 비교 연구

□ 기관 관계자 인터뷰

- 광주광역시형 평생교육 유관기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FGI)을 실시
 - 일 시 : (1차) 2018. 11. 13(화) / (2차) 2018. 12. 4(화)
 - 참석기관 : 관내 분야별 기관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1차) 평생교육사협회 회원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 (2차 1회) 평생교육학과 교수(강사) 및 평생교육 유관 기관장
 - (2차 2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광명시평생학습관
 - 주요내용
 -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사 배치현황과 고용의 형태
 - 평생교육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기관 설립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및 사례

II.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이론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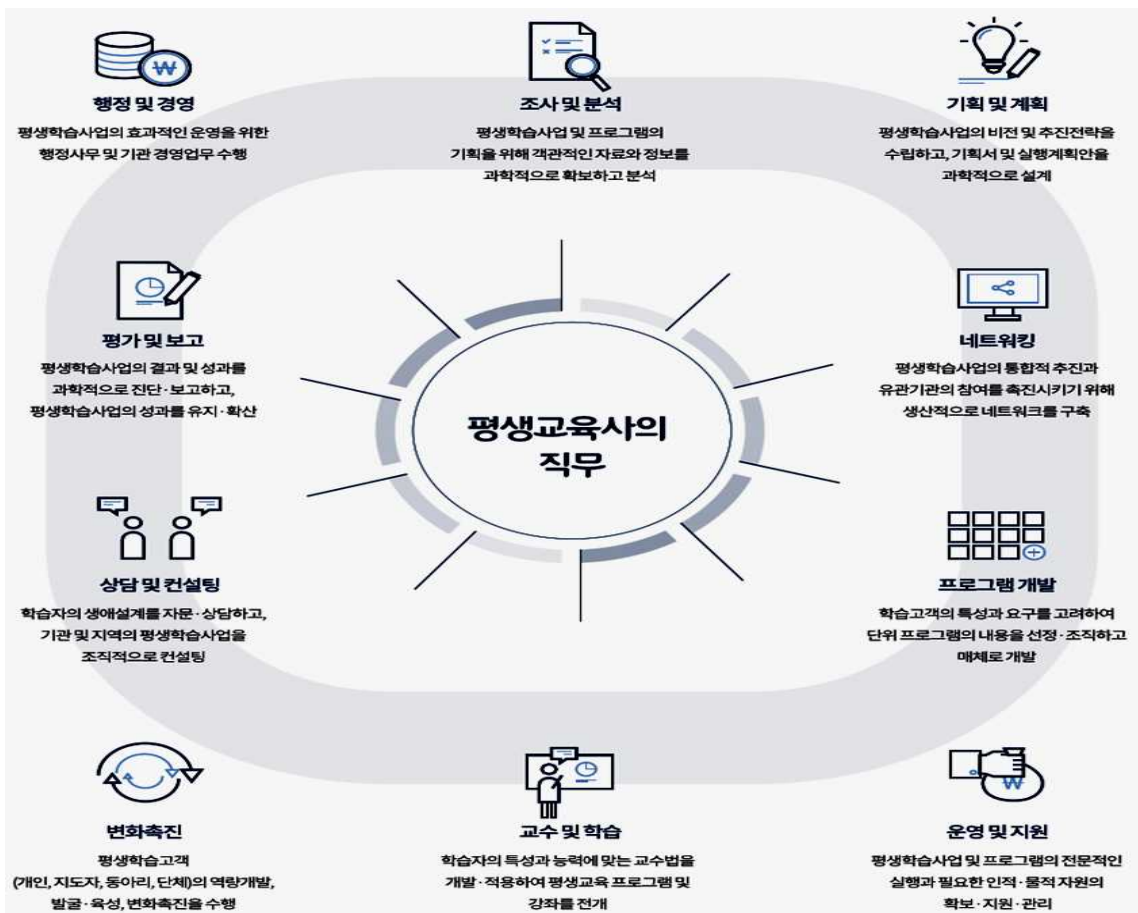
1. 평생교육전문인력: 평생교육사
2. 평생교육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3. 지방자치단체 조례
4. 국내외 사례

1. 평생교육전문인력: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함(평생교육법 제 24조, 2009).



참고자료 : 한국평생교육개발원(2007), 평생교육사의 직무분석과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그림 2] 평생교육사의 직무

- 이러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 개발, 운영평가, 컨설팅 업무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사 업무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업무와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

□ 평생교육사 제도 발달

- 평생교육사 제도는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 발달한 제도로 일본에서는 평생학습의 포괄적인 견해를 표명한 선두국가로서 질 높은 사회교육주사가 사회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1951년부터 양성을 시작함. 사회교육주사는 전문적인 교육직원으로서 「교육공무원특별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이들은 주로 지역 사회교육사업 및 활동 전개를 위한 행정적 지도·조언의 업무를 담당하며 일본 공공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양병찬 외, 2001). 선도적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사업을 모델화하여 전국에 확산됨.
- 영국에서는 1873년 대학확장운동으로 일반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까지도 대학이 평생교육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영국은 1995년 평생학습을 발표하면서 고용부와 교육부가 교육고용부체제로 일원화됨. 이후 평생교육 전담부서인 교육기술부로 개편함
- 프랑스에서는 평생교육사에 해당하는 자격인 애니마테르(animateur)가 사회문화 교육 활성화를 담당하는 전문가임. 전체에는 40만 명 이상의 애니마테르직이 있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들의 활동 영역은 교육적 여가 활동, 사회활동, 관광과 휴가 중의 레크레이션, 지역발전과 지역서비스 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됨. 청소년체육부에서는 청년층 실업대책으로 활용하여 청년층 실업자와 애니마테르 실습계약을 통하여 인턴 직원화하고 있음.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직화를 위하여 국가가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사회교육 담당 공무원을 “사회교육주사”로 행정 직렬화
 - 프랑스의 애니마테르도 문화센터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기관장의 기본 자격으로 인정되게 되는데 정부의 제도화 노력이 크게 작용함
 - 평생교육 담당자 양성과정에서의 인턴 형태의 현장 실습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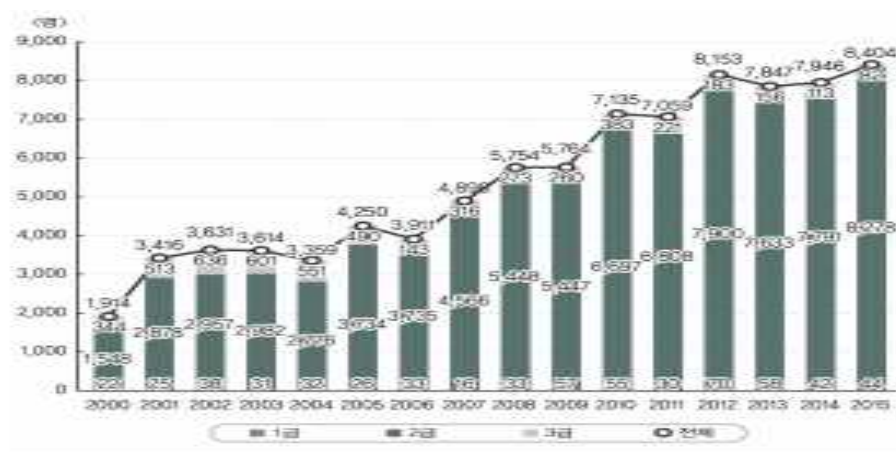
2) 평생교육 전문인력 : 평생교육사의 등장

(1) 법·제도적 변화

□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및 양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 되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제도가 국가자격제도로 형성됨
 -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으로 변화됨에 따라, 자격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 배치, 연수 등이 전반적 구조가 바뀌게 되었음
 - 2007년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보다 이수과정, 직무, 실습, 배치 기준에서 강화되었음(20학점→ 30학점, 평생교육실습 4주 등 교육과정 내실화)

- 현재 양성 인원 : 약 13만 명(2017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급 654명, 2급 116,533명, 3급 7,593명 등 총 124,780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기존 사회교육법에 의거 사회교육전문요원 21,834명 포함)
 - 평생교육법 재정 이후(2000~2017) 18년 동안 평균 5,589명이 양성되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이는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국적 배치 확산 경향에 따른 평생교육사 전문자격 증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평생교육통계자료집"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2017). <http://lifelong.kedi.re.kr/index.jsp>의 자료를 재구성

〔그림 3〕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자 현황

(2) 사회적 변화

□ 사회·경제적 변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즉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지식과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도래,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에 적응을 위한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로 평생교육의 체제화를 요구함
- 포용과 혁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평생학습을 강조(OECD, EU)하는 전 세계적 추이에 의해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노동, 여가’가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순환형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이 제기됨
-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 지식경제사회·고령화라는 변화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평생교육서비스의 전문화와 직결됨
 - ※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 2004년 17% → 2011년 32.4% → 2017년 34.4%(2017평생교육백서)
- 지역평생교육 현장의 전문직화를 통한 지역 평생교육 특성화 및 주민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필요성이 증대됨
- 학습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교육 제공을 통한 지역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 필요성이 요구됨

(3) 사회적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사 고용의 필요성

- 우리사회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고용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 영역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직업영역 인식보다는 사회 봉사 영역개념으로 인식되어져 전문 직업영역으로서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21세기 다양한 학습형태가 공존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평생교육 허브역할을 담당할 평생교육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 고용이 필요하고 체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지식기반사회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지역의 발전과 평생학습 이념을 명시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현할 전문조직이 필요함
- 평생교육사 고용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자원 체제를 명확하게 정립하여야하며, 기관·단체, 학교·사회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행정기관은 평생교육사 고용을 위한 지원 체제로서의 기능을 인식하고 수행능력을 신장해야함
-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주민이 필요할 때에 원하는 내용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관, 시설, 단체가 합심하여 주민의 삶의 기회와 평생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인, 지역사회, 문화,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함
-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 개발로 인간적인, 사회적인, 직업기술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의 고용제도가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4) 현황과 과제

□ 평생교육사 양성체제 개선이 우선

- 학점 이수형 양성과정 체제의 개선 시급[ex: 과정이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하므로, 양성과정 운영기관 내 전담교수 미배치 등의 사례 지속 발생] → 전공 과목체제 또는 자격검정 시험체제로의 전환모색 중임
 - ※ 법 제 24조(평생교육사) 제 1항 1호-3호 및 시행령[별표 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 → '전공과목으로 이수' 삽입, 변경
- 실습과목에 대한 무분별한 학점인정, 대학 양성기관의 자격검정 업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ex: 담당자의 잦은 교체, 주요 검정항목 미확인 등 사례 발생]
- 법 개정('07)에 따른 자격 취득 관련과목 및 자격급수별 이수학점 변경사항 미적용 및 오적용 사례방지가 요구됨

□ 평생교육사의 고용, 배치 관련 규정 실효성 확보

- 평생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마련되었으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자 대비 취업률은 4.5%에 불과함
 - ※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등록·신고한 경우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의무 배치
 - ※ 최초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자(1986-2017)는 124,780명이나, 주요 취업분야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는 6,677명에 한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기준('17년)에 근거한 주요 평생교육추진체제에 재직율은 78.5%에 이름
- 평생교육기관 관리감독 주관기관의 사후관리감독 역할 미비 및 관련규정 미준수로 시설 처벌·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부재함
- 지역 공공분야 평생교육사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음
 - ※ 2년 단위 재계약 형태로 인한 고용불안, 장기적인 경력개발의 한계로 전문 인력의 이직률 증가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관리·감독 주체 명시

- '1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춘진 의원, 의안번호 1182)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며, 해당 업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되었으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관리·감독 기능은 부재함
- 양성과정 운영의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질적 수준 유지가 필요함 (자격취득 관련과목 및 자격급수별 이수학점 변경사항 미적용 및 오적용, 전담교수 미배치 등)
- 자격제도 관리기관을 중앙(국가)단위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권한 부여 및 명시가 필요함

□ 평생교육 현장 실습 과목 운영의 질 관리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4주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원)의 경우, 수업과정으로 미편성(4주간 현장실습만 실시), 부적합한 기관에서 실습 허용, 실습기간 오류(4주 미만 실습), 실습 내용 미흡(복지업무, 도서업무 등) 등 실습과목 운영의 질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및 읍·면·동 단위 의무 배치

-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사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2017년 기준 124,780명(출처: 교육부) - 평생교육사 전체자격증 대비 공공기관 채용율 : 1.13%(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 기준) - 기관유형별 채용현황 : 일반지방행정조직(시·도청, 시·군·구청) 38.0%, 시·군·구 평생학습관 30.4%, 지방교육행정조직(교육청, 교육지원청) 14.1%, 주민자치센터·학교 등 배치 전무
--

- 고용 없는 양성 확대로 국가자격증으로서의 평생교육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이에 따라 일선 평생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및 전문화 요구에 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증으로, 2017년 현재 전문 인력 약 13만 명 이상 배출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의무가 강조되면서 일선 평생교육 현장의 안정적·전문적 운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 인력이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음. 평생교육사를 채용한 곳도 계약직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대부분임
- 모호한 관련 법률의 개정,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처럼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화’를 통해 평생교육을 전담할 공무원이 안정적 고용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평생교육 정책 서비스 제공해야 함
- 근거리 생활권인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 체제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생애학습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3) 향후 계획안

□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는 다음과 같음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법」 제 20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의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시군구청') : 시·군·구
- 교육청 : 서울, 부산, 경기 등 시도 단위 교육청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개편 및 질 관리 체제 도입은 다음과 같음

- (단기)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등록제 및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기관 적합성 평가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승인
 - (중기) 평생교육사 자격등급 및 승급제도 개편(1급, 2급, 3급)→진입조건 및 대상의 차별화
 - (장기) 평생교육사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 일정시간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주기적 자격갱신제 도입, 운영 → 구인·구직의 원활한 연계 및 정보교류 활성화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5년('13~'17, 총 26회)간 운영한 연수프로그램에는 총 2,076여 명이 참여한 수준임(이는 전체 평생교육사수 대비 1.67% 비율 수준에 불과)
- 출처: 2017년 평생교육백서

□ 평생교육사 역할 및 직무개정, 배치기준 강화가 요구됨

- 시행령 제 17조(직무범위)→다면적, 전문적 역할로 수정, 개정
- 시행령 5장(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인가·등록·신고를 담당하는 교육감의 사후관리감독(시설의 의무이행조사 및 보고) 역할 명시, 현 배치기준을 직원 정원 대비 평생교육사 배치율로 조정
- 법 제 42조, 46조(행정처분, 과태료) → 평생교육시설 인가·등록 신고한 이후 평생교육사 미배치, 관련 변경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명시

□ 직업으로서의 평생교육분야 분류 체계화가 요구됨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내 평생교육 관련 직종 코드 부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내 평생교육분야 분류

□ 평생교육의 전담공무원 직렬 편성 추진이 요구됨

- 전문경력직: 순환근무로 대체할 수 없는 평생교육 전문분야 담당 직렬화.
- 임기제공무원: 평생교육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2. 평생교육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의 목적, 평생교육 및 관련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의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3장은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관한 규정임
 - 제4장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임
 - 제5장은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이다.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 설치 및 폐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6장은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소정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칙은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취소 및 폐쇄,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하는 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평가로는 1965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개최된 ‘세계성인교육발전회의(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에서 탄생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 197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이후 평생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을 향상시키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평생교육법」의 탄생으로 한국의 평생교육이 급속도로 선진화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고, 다수의 평생학습자들이 자신의 평생학습

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수의 교육제공자를 규제한 조문들로 구성된 「평생교육법」은 세계 최초로 일국의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평생교육은 법률에 기반함

<표 1>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구분	법 조항	내용
헌법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 기본법	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10조 1항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평생 교육법	4조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6조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평생교육법의 한계

- 내용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1999년 8월 31일에 전부개정(법률 제6003호)하여 탄생된 8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된 법임

〈표 2〉 평생교육법제의 변화과정상의 특성과 한계

구분	특징	한계
사회 교육법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처음사용 ·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제시 · 한국평생교육제도의 기본 골격 구축 · 평생교육 전문가 자격인정을 위한 국가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교육진흥임무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 · 평생교육 추진체제 규정 미제시
평생 교육법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하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체제 정비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규정신설 · 평생교육 전담조직 체제 구축 · 평생교육 시설의 세분화 · 국민의 평생학습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의 책무 등의 개념에 관한 사항은 구, 사회교육법 내용을 존치시킴
평생 교육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기회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단 및 제도의 체계화 ·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추진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운영 ·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 정비 · 문해교육 및 성인문해 학력인증제도와 평생학습계좌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간 평생교육추진체제의 이원화 체제 유지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평생교육시설 관리 등 시행상의 문제점 발생 · 평생교육 개념 정의에 대한 모호함과 영역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

출처: 변종임 외(2014),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정비방안 연구. p.30.

□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및 현황

- 평생교육법은 2007년 전부 개정된 이래 2017년 말까지 타 법 개정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법 개정을 제외하고 총 8차례에 걸쳐서 법 개정이 이루어

어저 왔음.

- 최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5)을 살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표 3>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제14조의2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4조의2(평생교육 전담공무원) ① 평생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 전담공무원은 제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전담공무원은 평생교육 수요와 실태조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출처: 의안발의 1358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자료. 2018. 11.

- 현재 평생교육사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영역¹⁾에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전담인력 대비 15.9%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음.

1)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청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함.

〈표 4〉 공공영역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및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단위 : 개, 명, %)

기관유형		기관수 (A)	평생교육 전담인력 ²⁾ (B)	평생 교육사 수 (C)	평생교육사 비율 (C/B)	기관당 평생교육사 수 (C/A)
시·도청		17	95	12	12.6	0.7
시·군·구청 ³⁾		228 ⁴⁾	1,854	400	21.6	1.8
			(728)	(201)		
시·도교육청		17	140	19	13.6	1.1
지역교육지원청		176	996	55	5.5	0.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170	42	24.7	4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351	139	39.6	8.2
시·군·구 평생학습관	지자체 설치 ⁵⁾	131	1,038	273	26.3	2.1
			(310)	(72)		
	교육감 설치·지정	290	5,243	743	14.2	2.6
총계 ⁶⁾		877	8,849	1,410	15.9	1.6

* 대상: 공공영역 평생교육 기관 877개(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청 평생학습관)

※ 다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기관이 아님

1)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기관의 전체 직원수임.

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현황이 포함되었으며, 평생학습관 현황은 괄호 안에 표기

3)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4)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군·구 인력 현황을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현황으로 활용하였으며 시·군·구 현황은 괄호 안에 표기

5) 중복된 현황을 제외한 합계

자료: 교육부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를 통해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제도(표4의 평생교육 전담인력 참조)신설은 공무원 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방공무원 소관법률인 「지방공무원」 등에서 규정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관련법간의 관계

현행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기본법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행 평생교육법 이외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 평생교육법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라든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과 기본법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개별법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이 있음
- 둘째,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가운데에서 평생교육 전담인력 양성 및 배치와 관련한 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은 각각 사회복지사, 문화예술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셋째,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가운데에서 학력인정관련 법령으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노력의 성과

- 2017년에 들어서 평생교육계에서는 한국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법 개정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평생교육계의 정책포럼 및 공청회를 통하여 2017년도에 주로 거론된 평생교육법 개정관련 과제는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및 전담공무원제, 평생학습 이력관리제,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 등과 관련된 것임

〈표 5〉 2017년 개최된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포럼 또는 공청회 내용

구분	평생학습타임즈 주관 포럼	한평연, 평교협, 전평협 주관공청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정책포럼	전국평생학습 연석회의 주관공청회
일자	2017. 3. 27	2017. 7. 10	2017. 9. 29	2017. 11. 14
주제	· 차기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의 향배를 논하다	· 국가가 책임지 는 모두의 평 생학습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 교육 정책과 과제	· 국가가 책임 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재구조화 · 평생교육 6대 영역정책 아젠다 ·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와 전담 공무원제도 도입 · 장애인 평생학 습권 · 평생학습도시화 마을공동교육체 · 평생학습 사회 적 일자리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전달 체계개선 · 평생교육사 지 위향상 및 의 무배치 · 사회양극화 해 소를 위한 평 생학습 바우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참여 제고를 위한 바우처 · 나노디그라와 K-MOOC · 지역학습 서비 스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학습 모임 · 평생학습법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인 제도입 · 평생교육사 전문성과 배 치확대 · 인생 3기 평 생교육활성화 지원법 제정 안 · 평생학습이력 관리 및 평가 인정에 관한 법

-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의 자격, 양성과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광역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사를 고용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 인력의 배치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까지 양성된 평생교육사는 약 13만 명(2017년 말)이지만 대부분 민간 기관에 배치되고 이에 비해 공공기관 채용률은 미비한 상황이며 배치된 경우도 고용의 불안정(계약직)으로 인하여 연속적이고 창의적인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조례의 설치·운영 근거

-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 진흥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관련 임무로 각각 부여하고 있음
-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의 이원화된 체제로 평생교육전담기구의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조례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임무와 관련한 시·도 지사의 임무를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평생교육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시·도 협의회는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시·도에서는 평생교육 조례를 통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6>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회의회 구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관련 조례제정	위원구성	위원구성(15명)
광주광역시	완료	완료	공무원(市 2명, 교육청 2명), 평생교육전문가 6명, 교육기관 4명, 기타 1명

출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 평생교육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 또,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도는 조례를 통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표 7> 시·도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관련 특성

연번	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규정		
		설치·운영 규정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규정	운영형태
1	서울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2	부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3	대구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4	인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5	광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6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7	울산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8	세종		세종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9	경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10	강원		강원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1	충북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2	충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치·운영
13	전북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4	전남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5	경북		경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6	경남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17	제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정 위탁·운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

- 한편, 평생교육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표 8〉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배치 등 및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규정 여부

연번	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배치 및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조항		
		평생교육사 배치규정 유무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기타
1	서울	배치규정 있음(○)		은평학습장 등 규정
2	부산	배치규정 없음(×)		
3	대구	배치규정 없음(×)		
4	인천	배치규정 없음(×)		
5	광주	배치규정 없음(×)		
6	대전	배치규정 없음(×)		
7	울산	배치규정 없음(×)		
8	세종	배치규정 없음(×)	평생학습관 운영규정	
9	경기	배치규정 없음(×)		영어마을 운영규정
10	강원	배치규정 없음(×)		안전보험가입 규정
11	충북	배치규정 없음(×)		
12	충남	배치규정 있음(○)		안전보험가입 규정
13	전북	배치규정 없음(×)		안전보험가입 규정
14	전남	배치규정 있음(○)		
15	경북	배치규정 없음(×)		
16	경남	배치규정 있음(○)	평생학습관 운영규정	
17	제주	배치규정 없음(×)	평생학습관 운영규정	문해교육 운영규정
	소계	4개 시·도만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

- 한편, 이들 시·도 차원의 평생교육조례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제정된 평생교육 조례는 다음과 같음

<표 9> 시·군·구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평생교육센터의 장 자격 기준

구분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장 자격 관련 규정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자격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의 군수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라남도 광양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운영요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유급 운영요원을 둔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전라북도 정읍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평생학습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된 평생학습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평생교육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행정 분야 근무기간이 20년 이상 이상인 자로서 5급 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

□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 조례 구성 현황

-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임무와 관련한 평생교육법의 규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

〈표 10〉 교육감의 임무와 관련한 평생교육법상의 규정 내용

구분	평생교육법 조항	관련 내용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교육감에 등록, 학력인정 기관의 경우 지정절차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교육감 신고
사업자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교육감 신고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교육감 신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교육감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교육감 신고
행정처분	평생교육법 제42조	법령 위반시
지도·감독 업무	평생교육법 제42조 2	교육감 신고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지원	평생교육법 제39조제2항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과 지원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임무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그 운영 임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

-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음

<표 11>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내용 분석

구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경비 지원	학습비징수 및 감면	담당부서명
서울		○	○	○	평생교육과
부산		○	○	○	건강생활과
대구		○	○	○	교육복지과
인천		○		○	평생교육체육과
광주		○	○	○	미래인재교육과
대전		○	○	○	교육정책과
울산		○	○	○	평생교육체육과
세종		○	○	○	행정과
경기		○	○	○	평생교육과
강원		○	○	○	지식정보과
충북		○	○	○	과학국제문화과
충남		○	○	○	행정과
전북		○	○	○	미래인재과
전남		○	○	○	행정과
경북		○	○	○	과학직업과
경남		○	○	○	창의인재과
제주		○	○	○	미래인재교육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조례 분석에 의거

□ 향후과제

-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는 이원적인 체제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 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시·도 차원의 일반 행정과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육행정이 상호 파트너십 하에 협력 및 지원체제를 지니고 지역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를테면, 평생교육 진흥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행정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학력 및 학위인정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의 지도·감독 기능은 교육청 중심으로 이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4. 국내·외 사례

1) 국외 사례

문헌고찰에 따르면 연구대상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국가발전에 잠재적인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친밀한 학습거점 및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1) 일본의 사례: 고용현황과 사회교육주사

□ 일본 평생교육

- 일본 평생교육의 특징은 지방자치제 중에서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을 중심을 중심으로 하여 평생교육이 발전함
- 공민관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친밀한 학습 거점뿐 아니라 교류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민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학습관과 유사한 평생교육기관임

□ 일본 사회교육 주사는 독일 성인교육사 자격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평생교육사가 만들어졌으며 평생교육 전문자격제도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1990년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를 통하여 기초단체인 시정촌의 평생학습센터에 해당되는 시설 및 정비에 관한 기준 제정하여 문부대신의 권한에 두도록 정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본구상을 책정하고 국가 및 지역수준의 평생학습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민간 부분의 평생학습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및 감면 조치 등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사격인 ‘사회교육 주사’에 관한 규정은 1951년 일부 개정된 사회교육법에 삽입되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회교육지도자’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역할에 있어서 ‘민간지도자’와 ‘행정관계지도자’로 구분됨
- 일본의 사회교육 주사는 공무원으로 “사회교육기관·단체에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기능으로 부가 받고 있으며, 사회교육 주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교육청)에 배치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교육주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주사로 발령을 받아야 함
-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교육사라 칭할 수 있는데 반해, 사회교육주사는 발령을 받아야만 그렇게 칭할 수 있으며, 사회교육주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공민관 등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음
- 사회교육주사는 사회교육법 제9조 3에 「사회교육을 행하는 자에게 전문적 기술적 조언과 지도를 함. 단 명령 및 감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음
- 공민관에서 일하는 공민관주사에 관해서는 자격규정이 법적으로 없는데 사회교육주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공민관주사로 일하면서 사회교육주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지역도 있음
- 2015년 2,048명인 사회교육주사에 비해 공민관 주사는 유사시설을 포함해서 1만 3천명이 배치되어 사회교육주사와 공민관 주사 등의 직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NPO나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교육주사 유자격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회교육주사 제도를 둘러싼 검

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 또한 그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자주적인 학습모임을 만든다든지, 교육위원회와 대학이 연계해서 사회교육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 독일의 사례 : 성인교육사

- 독일 평생교육
 -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교육연구부가 담당. 7개의 부서 조직 됨(전략과 정책 이슈, 유럽연합 및 국제적 협력,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과학 시스템, 핵심기술, 생명과학, 미래에 대한 대비)
 - 평생교육업무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부서에 진행함
- 독일은 평생교육이 잘 발달된 나라 중의 하나임. 전쟁 이후 분단되어 있던 국가를 하나로 통일한 독일정부는 동독과 서독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일환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하였음
- 또한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3세대 연령(Third Age)의 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지원금제도인 평생교육적금은 적립금을 평생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7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만기 시에 높은 만기이자를 받게 되어 있음

- 평생교육적금제도는 만기이자 보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적립액을 계속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은 직장인 우대적금을 자신의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부담함
- 평생교육대출제도는 평균교육비용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높은 수업료의 평생교육과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대출금으로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수업에 관련된 부대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음

(3) 프랑스의 사례

- 프랑스평생교육
 - 프랑스에서는 평생교육사에 해당하는 자격인 애니마테르(animateur)가 사회문화 교육 활성화를 담당하는 전문가임
 - 전체에는 40만 명 이상의 애니마테르직이 있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들의 활동 영역은 교육적 여가활동, 사회활동, 관광과 휴가 중의 레크리에이션, 지역발전과 지역서비스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청소년체육부에서는 청년층 실업대책으로 활용하여 청년층 실업자와 애니마테르 실습계약을 통하여 직원화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직화를 위하여 국가가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음
 - 프랑스의 애니마테르도 문화센터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기관장의 기본 자격으로 인정되게 되는데 정부의 제도화 노력이 크게 작용함
 - 평생교육 담당자 양성과정에서의 인턴 형태의 현장 실습을 강조함

(4) 미국의 사례 : 평생교육 설치 현황

- 미국 평생교육
 - 미국의 주정부는 지방의 기관 및 단체들과 더불어 평생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함

-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 부서는 성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교육과 관련한 교부금 집행, 프로그램 질과 책무성 향상 등 성인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함
- 미국의 평생교육사들은 성인의 기초교육분야 종사는 ‘성인교육자(adult education)’와 계속교육에 관여하는 ‘계속교육자(continuing education)’로 역할이 나누어짐
- 미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직결되어 산업구조가 다운사이징의 장기적인 효과와 경쟁 심화에 따른 결과 미래의 경영자 육성과 현재의 재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경영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산업교육담당자’를 양성하고 있음
- 산업교육담당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2) 국내 사례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교육청⁷⁾

<표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및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사 채용(배치) 현황

구분	직속기관(평생학습관)				교육지원청						계
	고덕	노원	영등포	마포	서부	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동작관악	강북성북	
인원	2	2	2	3	1	1	1	1	1	1	15
배치연도	2007.10	2007.10	2007.10	2003. 1. 2007. 6.	2011.4. 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서부, 동작관악, 강북성북(평생학습도시 중심)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관 : 1999. 7. 16 「평생학습관 설치」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등), 서울시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 설치기관 : 고덕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 2000. 7. 13.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교육과학기술부 지정)
- 지정기관 : 마포평생학습관(사업규모 연 1억 7천만원)
 ※ 평생교육법 (2007. 12. 14 개정) 부칙 제4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이 센터지정
- 2003. 1. 평생교육사 배치(별정 7급 1명, 마포평생학습관)
- 관련 조례 제정 : 2003. 1. 1.
- 2007. 6. 평생교육사 배치(4개 평생학습관, 각 1명, 전임계약 '마'급)
- 2011. 6. ~ 평생교육사 배치
 - 4개 평생학습관, 각 2명, 전임계약 '라'급
 - 4개 평생학습관, 각 2명, 임기제 8급(일반행정직), 2013. 12. 조직 변경
 - 2014. 4. 23.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마포평생학습관) 개소
- 서울평생학습센터 424개소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평생교육사 배치 추진 예정

7) 2018. 12. 3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직원 면담을 통한 사례분석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 2007. 8 ~ 2010. 8.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추진
- 사업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내용 : 전국 38개 지역교육청 122개교 공모.선정
- 운영규모 : 1개 청당(3개 거점학교 운영), 연 1억원 내외 지원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개 교육지원청(남부·강서·동작)에서 추진·운영
- 2011. 2. 서울시교육청 전담 부서 조직
- 본청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 조직 1명 배치(2016.1.1. 일반직 배정)
- 교육지원청 : 평생교육건강과 내 평생교육팀 조직(6개청 평생교육사 배치)

□ 임기제 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사 채용 현황
 - 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 - 계약형태 : 연 단위 재계약
 - 공무원 정원 내에서 선발(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과리)
- 문제점
 - 전문인력 확보 곤란 / - 지자체 등 신규 채용(7급)으로 인력 이동 발생
: 서부교육지원청 -> 종로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관악구청
- 육아휴직 및 연봉 책정시 불이익 발생으로 근로복지 보장
 - : 2017년 영등포평생학습관 육아휴직 불가능으로 퇴사
- 5년마다 신규채용으로 연봉 삭감 : 2017년 채용 경우 연봉 3백 정도 삭감
- 기관 간 순환근무 불가로 조직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 어려움
: 2010년 본청->노원, 고덕->본청, 고덕 신규 / 2014년 영등포-> 마포
- 개선방향
 - 고용안정 및 전문인력 확보

제1안 전문경력관 전환

 - 전문경력관 전체 정원 비율 상향 조정 조례 개정
 - > 전문경력관 전환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아님

제2안 직급조정 및 계약기간 조정

 - 7급 채용 / · 2년-3년 재계약
- 전문성 향상 연수: 공무원은 신규, 복직자 대상 연수 필수, 임기제는 필수연수 없음

□ 서울특별시 신설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

〈표 13〉 서울특별시 신설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④ (생략) <신 설>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운영 계획 수립예정

(2) 대구광역시

□ 평생교육 현안 및 발전방향⁸⁾

- 제도적 기반
 - 대구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2009. 5. 11)
 -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구, 달성군 등 5개 구·군 평생교육조례 제정
- 전담인력 부족
 - 대구시 : 평생교육 전담인력 확충, 현재 4명(2명은 대구, 경북연구원업무겸직)
 - 시교육청 : 전담인력 6명(동부, 남부, 달성교육청은 평생교육사 배치)
- 전담조직 미흡
 - 동구, 수성구, 달성구, 달성군, 북구 등 5개 기초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8) 2015, 국가-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총괄 조정기능 미약
 -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간, 대구시와 시교육청 간 유기적 연계 미흡
 -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총괄조정 기능 확보 필요
- 평생교육 예산부족, 소외계층 프로그램 참여 미흡,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미약
 - 평생교육사업 2013년 신설→사업 예산(2억 5천만원) 증액 조정 필요
 - 실태조사결과 수요대응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소외계층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필요

(3) 경기도

□ 광명시 평생교육법령기관 직원 현황⁹⁾

- 평생교육기관 최종학력별,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여부는 근무 직원의 현황을 통해 총 61명 중 최종학력별로는 고졸이하 4명, 전문대졸 11명, 대졸 41명, 대학원졸 5명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는 53명이 정규직, 비정규직은 8명임
- 자격증 소지여부는 없음이 44명, 2급은 17명으로 나타남

□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사 배치 사례

- 2005년부터 평생교육사를 동 단위로 배치를 완료함

〈표 14〉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사 배치 사례

주민센터 수	14개
배치조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감 35시간
급여체제	마감 23,000,000원
근무시간	주 35시간

9) 제4차 광명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6)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근거조례	제2조(정의)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함 제22조(평생교육사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 할 수 있음
특이사항	평생교육사를 배치 추진 초기에는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유급간사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1년 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면접을 통과시키고 배치하였음(초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활동했으나 현재는 모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4)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2010. 10. 1에 제정되어 5차례 개정되어 2018. 5. 1에 조례 제 5090호로 개정되었으나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그 어떠한 곳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음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또는 지원) /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에 제6조(설치), 제7조(기능), 제8조(구성), 제9조(임기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수당 등), 제13조(운영규정) /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에 제14조(설립 등), 제15조(업무), 제16조(재원조성 등), 제17조(사업계획서 승인 등),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 제4장 문해교육에 제21조(문해교육 사업), 제22조(문해교육센터 지정) / 제5장 보칙 제23조(학습자 안전조치), 제24조(지도·감독), 제25조(포상), 제26조(시행규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

Ⅲ. 평생교육사 고용 현황 조사 및 분석

1. 총괄사항
2. 평생교육사 재직·배치 현황
3. 광주광역시 현황분석

1. 총괄사항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국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사 고용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평생교육사 고용 증진을 위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함
- 평생교육사 배치의 법적 실효성 확보와 평생교육 역할 수행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를 유도함
-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 직렬화가 필요하며 이에 선행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직무분석과 역량개발이 필요함
- 본 조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구축을 위함.

2)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 해외 사례 문헌조사

3) 조사내용

- 기관정보
 - 기관명 ■ 부서명 ■ 자격증 소지자 유무 ■ 평생교육사(직) 재직 여부
-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 평생교육사직 근무자 : 고용형태 ■ 자격증 소지유무

4) 조사방법

- 1차 웹기반 기초조사
 - 2018. 10. 1 ~ 10. 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교육백서 (www. nile.or.kr)
- 2차 전화 및 온라인조사
 - 2018. 10. 1 ~ 10. 31 온라인 조사 이후 기관을 대상으로 유선조사 및
방문조사 실시
- 방문조사
 - 2018. 11. 1 ~ 11. 10 온라인 조사 이후 기관을 선정 방문 및
면담조사 실시

2. 평생교육사 재직·배치 현황

1)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

□ 공공영역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및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 현황

- 공공영역 평생교육관에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10명의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가 재직 중임
- 877개 평생교육기관에 1,410명의 평생교육사가 재직 중으로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당 1.6명의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가 재직 중임
-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의 67.9%인 957명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사 자격급수를 보면 127명이 1급 자격을, 1,236명이 2급 자격을, 47명이 3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및 배치 기준 충족 현황

-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율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5%로, 877개 기관 중 627개 기관에 배치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평생교육사 의무 배제 기관인 평생교육 전담·지원 기구의 경우 439개 기관 중 90.4%인 397개 기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을 보면 시도청의 경우 17개 기관 중 6개 기관(35.3%)에, 시군구청의 경우 228개 기관 중 175개 기관(76.8%)에, 시도교육청의 경우 17개 기관 중 10개 기관(58.8%)에,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176개 기관 중 39개 기관(22.2%)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었음
-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을 보면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18개 기관 모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었고,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경우 421개 기관 중 379개 기관(90.0%)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었음

<표 15> 공공영역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및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단위: 개, 명, %)

기관유형	기관수 (A)	평생교육전담 인력 ¹⁰⁾ (B)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평생교육사 수(C)	평생교육사 비율 (C/B)	기관당 평생교육사 수 (C/A)	고용형태												자격급수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D)	무기계약 (E)	계 (D+E)	정규직 비율	임기계약	시간 선택제 임기 계약	기간제 계약	시간제 계약	기타	계	1급	2급	3급		
시도청	17	95	12	12.6	0.7	1	1	2	16.7	4	3	-	-	1	10	3	9	-		
시군구청 ¹¹⁾	228 ¹²⁾	1,854 (728)	400 (201)	21.6	1.8	69 (54)	22 (6)	91 (60)	22.8	137 (50)	134 (66)	29 (18)	6 (5)	3 (2)	309 (141)	59 (24)	340 (117)	1		
시도교육청	17	140	19	13.6	1.1	16	3	19	100.0	-	-	-	-	-	-	-	18	1		
지역교육지원 청	176	996	55	5.5	0.3	25	18	43	78.2	6	1	5	-	-	12	7	47	1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1	170	42	24.7	42	20	3	23	54.8	-	-	19	-	-	19	10	32	-		
시도평생교육 진흥원	17	351	139	39.6	8.2	74	12	86	61.9	10	-	35	0	8	53	21	116	2		
시군구 평생 학습관	지자체 설치 ¹³⁾	131	1,038 (310)	273 (72)	26.3	2.1	60 (6)	11 (5)	71 (11)	26.0	81 (31)	91 (25)	23 (5)	5	2	202 (61)	34 (10)	239 (62)	-	
	교육감 설치지 정	290	5,243	743	14.2	2.6	625	68	693	93.3	22	1	23	4	-	50	27	674	42	
총 계 ¹⁴⁾	877	8,849	1,410	15.9	1.6	830	127	957	67.9	179	141	111	10	12	453	127	1,236	47		

출처: 2017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 현황조사 결과보고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기관의 전체 직원수임
 1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현황이 포함되었으며, 평생학습관 현황은 괄호 안에 표기
 12)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13)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군구 인력현황을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현황으로 활용하였으며 시군구 현황은 괄호 안에 표기
 14) 중복된 현황을 제외한 합계

〈표 16〉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현황

(단위: 개, %)

기관유형		배치	미배치	전체	배치율
지방 자치 단체	시·도청	6	11	17	35.3
	시·군·구청*	175	53	228	76.8
	시·도교육청	10	7	17	58.8
	지역교육지원청	39	137	176	22.2
평생 교육 전담 지원 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	1	100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	17	100
	시군구 평생학습관				
	지자체 설치**	123	8	131	93.9
	교육감 설치·지정	256	34	290	88.3
계		627	250	877	71.5

* 지자체 실시 평생학습관에 배치된 경우를 포함

** 지자체에 배치된 경우를 포함

출처: 2017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 현황조사 결과보고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 전담·지원 기구 중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9개 기관 중 377개 (85.9%) 기관이었음

〈표 17〉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충족 기관 현황

(단위 : 개, %)

기관유형	충족	미충족	전체	충족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	1	100%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0	7	17	58.8%
시군구 평생학습관(지자체 설치)	122	9	131	93.1%
시군구 평생학습관(교육감 설치·지정)	244	46	290	84.1%
계	377	62	439	85.9%

※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1)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일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일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2) 광주광역시

(1) 광주광역시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고용현황

<표 18> 광주광역시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고용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전담인력(A)	평생교육사자격소지자 재직현황															
		평생교육사수(B)	평생교육사비율(B/A)	고용형태										자격급수			
				정규직				비정규직						1급	2급	3급	
				정규직(C)	무기계약(D)	계(C+D)	정규직비율((C+D)/B)	임기계약	시간선택제임기계약	기간계약	시간계약	기타	계				
광주광역시청	4	-	-	-	-	-	-	-	-	-	-	-	-	-	-	-	-
소계	4	-	-	-	-	-	-	-	-	-	-	-	-	-	-	-	-
광산구청	4	1	25.0	-	1	1	100.0	-	-	-	-	-	-	1	-	-	-
남구청	5	1	20.0	-	1	1	100.0	-	-	-	-	-	-	1	-	-	-
동구청	10	2	20.0	-	1	1	50.0	1	-	-	-	-	1	1	1	-	-
북구청	6	1	16.7	-	-	-	0.0	1	-	-	-	-	1	1	-	-	-
서구청	7	4	57.1	-	-	-	0.0	2	2	-	-	-	4	2	2	-	-
소계	32	9	28.1	-	3	3	33.3	4	2	-	-	-	6	6	3	-	-
광주광역시교육청	7	-	-	-	-	-	-	-	-	-	-	-	-	-	-	-	-
동부교육청	16	3	18.8	1	1	2	66.7	-	-	1	-	-	1	-	3	-	-
서부교육청	18	1	5.6	-	1	1	100.0	-	-	-	-	-	-	1	-	-	-
소계	41	4	11.8	1	2	3	75.0	-	-	1	-	-	1	1	3	-	-
총계	77	13	16.8	1	5	6	46.2	4	2	1	-	-	7	7	6	-	-

(2)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고용 현황

<표 19>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인력 (A)	평생교육사자격소지자 재직현황															
		평생교육사 수 (B)	평생교육사 비율 (B/A)	고용형태											자격급수		
				정규직					비정규직						1급	2급	3급
				정규직 (C)	무기계약 (D)	계 (C+D)	정규직비율 ((C+D)/B)	임기계약	시간선택제임기계약	기간계약	시간계약	기타	계				
광주평생교육진흥원 ¹⁵⁾	16	8	50.0	7	-	7	87.5	-	-	1	-	-	1	-	8	-	
평생학습관지자체 설치	18	6	33.3	-	2	2	33.3	3	1	-	-	-	4	4	2	-	
평생학습관교육감 설치	352	55	15.6	48	4	52	94.6	-	1	1	1	-	3	3	52	-	
소계	386	69	17.8	55	6	61	88.4	3	2	2	1	-	8	7	62	-	

1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18. 12. 20. 현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인력 15명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9명(60%)이며, 평생교육사 1급 자격소지자가 1명, 2급 소지자가 8명이 재직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명, 임기계약 1명, 기간계약직이 1명임

3)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재직·배치 현황

(1)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재직·배치 현황

〈표 20〉 기관유형별 평생교육 기관수

기관유형		기관수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
	시·군·구 평생학습관	17
소 계		18
지방지치단체	구청	5
	교육청, 교육지원청	3
평생교육시설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시설	16
	원격교육형태	18
	사업장 부설	11
	시민사회단체부설	21
	언론기관부설	28
	지식인력개발형태	22
	평생교육시설	
소 계		124
총 계		142

(2) 기관별 자격소지 현황

-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구청에는 평생교육 전담인력 전체 32명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9명(28.1%)로 평생교육사 1급 자격소지자가 6명, 2급 소지자가 3명이 재직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동부, 서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전담인력 전체 34명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4명(11.7%)로 평생교육사 1급 자격소지자가 1명, 2급 소지자가 3명이 재직하고 있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설치와 교육감설치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 전담인력 전체 386명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69명(17.8%)로 평생교육사 1급 자격소지자가 7명, 2급 소지자가 62명이 재직하고 있음
-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1명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전문 인력이 5명이 허가 사항임
-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주에 있는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근무나 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 공공기관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 공공기관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주요 특성

단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사례수		716 (100.0)	157 (21.9)	559 (78.1)
기관유형	광역지방자치단체	11 (1.5)	5 (3.2)	6 (1.1)
	기초지방자치단체	261 (36.5)	55 (35.0)	206 (36.9)
	교육청	25 (3.5)	8 (5.1)	17 (3.0)
	교육지원청	76 (10.6)	11 (7.0)	65 (1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5 (6.3)	14 (8.9)	31 (5.5)
	시도평생교육진흥원	80 (11.2)	28 (17.8)	52 (9.3)
	평생학습관	218 (30.4)	36 (22.9)	182 (32.6)
평생 교육사직 채용여부	예	345 (48.2)	73 (46.5)	272 (48.7)
	아니오	371 (51.8)	84 (53.5)	287 (51.3)
고용형태	정규직	362 (50.6)	93 (59.3)	269 (48.2)
	무기계약직	94 (13.1)	14 (8.9)	80 (14.3)
	계약직 (1년~2년 미만)	159 (22.2)	28 (17.8)	131 (23.4)
	계약직(1년 미만)	26 (3.6)	5 (3.2)	21 (3.8)
	임기제	63 (8.8)	13 (8.3)	50 (8.9)
	기타/무응답	12 (1.7)	4 (2.5)	8 (1.4)

출처: 변종임 외(2015),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36.5%(261명)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평생학습관 30.4%(218명),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1.2%(80명), 교육지원청 10.6%(76명)등의 순서임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추진된 평생학습도시 사업,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확대 등이 공공영역에 평생교육사의 일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렇지만 평생교육사의 일터로서 공공영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평생교육업무를 위한 평생교육사 전적 채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음
 - 대부분 1명에서 2명 정도의 평생교육사 채용에 만족하고 있고 전반적 평생교육업무를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임기제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계약직, 임기제가 모두 같은 의미의 5년 비정규직임
 - 응답 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5년의 기간 내에 공무원 총 정원제에 포함이 되기에 정규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대부분의 평생교육사가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해석 할 수 있음
-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 2016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평생교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2017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음

〈표 2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기본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프로그램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평생교육사 자격미소지자	
전체	4,153	212,239	11,336,564	73,204	19,842	16,788	
학 교 부 설	소계	412	29,598	903,937	15,068	1,998	1,426
	유초중등 학교부설	6	57	1,337	35	15	14
	대학(원)부 설	406	29,532	902,600	15,033	1,983	1,412
원격형태부설	927	63,602	7,304,497	11,123	6,494	5,369	
사 업 장 부 설	소계	426	70,511	1,206,895	21,128	1,767	1,245
	유통업체 부설	378	69,138	1,141,911	20,389	1,544	1,066
	산업체부 설	48	1,378	64,984	739	223	179
시민사회 단체부설	544	6,206	156,000	3,575	1,479	955	
언론기관부설	792	4,624	151,101	3,604	2,010	1,325	
지식인력개발형 태	608	10,824	664,509	6,916	3,738	3,084	
평 생 학 습 관	소계	444	26,983	949,625	4,719	2,356	1,692
	교육감 설치 및 지정	344	20,982	713,238	2,593	1,744	1,194
	지자체 설치	122	6,974	248,957	2,126	713	498
학점은행제	421	12,148	1,418,212	-	4,829	1,130	

1) 중복기관 존재로 인하여 학점은행제 제외한 합계임

2) 학점은행제기간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값 없음

출처: 강대중 외(2017),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표 22〉에 의하면 평생교육사 미소지자의 수가 매우 높음
- 전체 4,153개의 평생교육기관 사무직원 19,842명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미소지자 16,788명의 경우, 기관 1개당 평생교육사 소지자수의 비율을 계산한다면 0.735명으로 1명이 채 안 되는 수준임

〈표 2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기본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당 평생교육사	기관당 학습자수	평생교육사 1인당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사 1인당 학습자 수
전체		0.74	2729.730	69.53	3712.04
학교 부설	소계	1.39	2194.02	51.73	3712.04
	유초중등학교 부설	0.17	222.83	57	1337
	대학(원)부설	1.41	2223.15	51.72	1580.74
원격형태부설		1.21	7879.72	56.54	6492.89
사업장 부설	소계	1.23	2833.09	135.08	2312.06
	유통업체부설	1.26	3020.93	144.64	2388.94
	산업체부설	0.92	1353.83	31.21	1476.91
시민사회단체부설		0.96	286.76	11.84	297.71
언론기관부설		0.86	190.78	6.75	20.59
지식인력개발형태		1.08	1092.94	16.55	1016.01
평생 학습관	소계	1.50	2138.8	40.64	1430.16
	교육감 설치 및 지정	1.60	2073.37	38.15	1296.8
	지자체 설치	1.76	2040.63	32.44	1157.94
학점은행제		8.79	3368.67	3.28	383.4

1) 중복지관 존재로 인하여 학점은행제 제외한 합계임

출처: 강대중 외(2017),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 평생교육사 1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 평생교육사 1인이 맡는 학습자 수를 보면 3,712여명에 달하고 있음
- 물론 원격형태부설 통계치인 6492.89명의 평균치 영향과 기관의 제반 업무를 평생교육사만 맡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형식기관의 평생교육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직무 환경은 매우 열악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강사 관리가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고려해 볼 때 또한 동일할 해석이 가능할 것임
- 국민과 가장 가까이 삶의 학습을 구현하고 있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가 수적으로 늘어나야 할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음

3. 광주광역시 현황분석

1) 기관별 자격소지 현황

(1) 공공영역

□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구청

-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구청 및 95개 주민자치센터로 볼 때 최소 평생교육전담인력이 127명(시본청, 5개 구청전담인력, 95개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전담인력 포함)이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평생교육 전담인력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9명(7.08%)로 평생교육사 1급 자격소지자가 6명, 2급 소지자가 3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로 볼 때 무기계약직이 3명, 임시직이 4명, 시간선택제임시제계약직이 2명으로 공공분야 평생교육사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의 우려가 있음

□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동부, 서부교육지원청

- <표 18>과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동부, 서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전담인력 전체 34명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4명(11.7%)으로, 평생교육사 1급 자격소지자가 1명, 2급 소지자가 3명이고, 고용형태로 볼 때 정규직이 1명, 무기계약직이 2명, 시간계약직이 1명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전담인력의 평생교육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의 우려가 있으며, 고용의 형태도 안정적이지 못함

□ 교육감설치 평생학습관

-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감설치 124개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 전담인력은 352명으로 그 중 현재 근무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69명(19%)이며, 그중 정규직이 55명, 무기계약직이 6명으로 비정규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계약이 2명, 시간제계약이 3명임.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인력 16명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8명(50.0%)이며, 평생교육사 1급 자격소지자가 0명, 2급 소지자가 8명이 재직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명, 기간제계약직이 1명임

IV.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평생교육사 지위 및 의무 배치
2. 평생교육사 고용정책 동향과 직렬화 추진
3. 평생교육사 지위향상 및 의무 배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평생교육사 지위 및 의무 배치

1) 평생교육사 지위 진단

□ 평생교육사의 역할

- 평생교육사 자격증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의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었음
- 평생교육법 제24조 1항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평생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등급에 따른 자격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1급과 2급을 제외한 3급의 현장 수요는 매우 미미한 상태임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은 2013년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발급 권한이 해당 대학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되었음

2) 평생교육사 배치 진단

□ 평생교육사 배치와 채용 근거

-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음
- 공공부문은 평생교육 전담기구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일반행정조직, 교육행정조직 등이 해당됨
- 민간부문은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학점은행제 기관,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 등임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①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운영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③ 평생교육 사업 외에도 ④ 평생 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동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에서는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조 관련]) 별표 2에서는 <표 18>과 같이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24〉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 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2017년 말까지 양성된 평생교육사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포함해서 약 13만여 명이며 실제 고용된 평생교육사는 약 5%에 해당되는 5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는 평생교육사의 자주 비교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결과치임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누적 건수가 총 84만 건으로 그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만 4천을 포함한 9만 2천명이 현장에 고용되었다고 하니 약 11%의 고용율임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고용율이 평생교육사에 비해 거의 두 배의 차이임을 알 수 있음

2. 평생교육사 고용정책 동향과 직렬화 추진

- 평생교육의 제도적 환경 변화로 인해 평생교육사의 배치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법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없다면 안정적 고용이 불투명함
- 현재 채용된 평생교육사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으므로 신분의 불안정과 평생교육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규직 역시 대부분 순환보직(2~3년)으로 인해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 역량강화 기회 부족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능력의 한계를 보임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공공 영역에서 평생교육사 직렬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순환보직체계가 아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평생교육 기반의 틀을 갖춰야 함
-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 비정규직채용 근거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의하여 현재 공공기관 평생교육사들은 5년 임기 내 계약직(전임, 시간제) 신분으로 채용하여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 채용에 응해야 함. 단,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총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2.3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 ②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비정규직의 신분으로는 고용이 불안정하여 지속성을 담보하는 평생교육 업무를 안정감 있게 수행하기 어려워 평생교육사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처럼 비정규직은 업무 지속성 확보나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의 직렬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안정적 고용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으며 평생교육에서도 일의 민주화, 생활화, 인간화를 위한 삶 전체에 걸친 학습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담 공무원 직렬화가 필요함
- 평생교육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직렬화처럼 평생교육사업에 관한 업무 담당을 위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평생교육 전담기구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법률과 조례에 재개정필요
- 최근에 발표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자격제도 발전 방안 연구에서도 관련 조문번호를 변경하여 직렬화 신설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첨부하면 아래와 같음

<표 25>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관련개정안(신설)

법령명	신설안
평생교육법	<p>제26조의2(평생교육 전담공무원)</p> <p>① 평생교육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이하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p>②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은 그 관한 지역의 평생교육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운영하며, 학습자 상담을 실시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과 평생교육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는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p>
평생교육법시행령	<p>제22조의3(평생교육전담공무원의 임용)</p> <p>① 법 26조의 1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평생교육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 1항에 따라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도, 시, 군·구·구 및 읍·면·동에 따라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의 배치하는 기준은 령 제22보의 [별표1], [별표2], [별표3]을 따른다.</p>

출처: 강대중외(2017), 평생교육사자격제도 발전 방안 연구

-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이 신설될 때, 평생교육사들이 공공영역에 종사할 기회가 확대될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을 통한 평생교육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임
-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비정규직 제로의 선언에 걸맞게 공무원법 /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직렬이 신설되길 희망함

3. 평생교육사 지위향상 및 의무배치를 위한 정책 제안

- 공공일자리 창출 : 1도시 1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 비중은 현재 8.8%(평균 21%)로서 OECD국가 중 꼴지에 해당함. 평생교육사야말로 공공성을 갖고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이며 거스를 수 없는 평생학습시대를 풀 수 있는 열쇠를 평생교육사가 갖고 있는 것임
 -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별 평생교육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며, 국민들의 학습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근거리 학습망 조성이 시급함
 -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이야말로 국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민의 학습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임
 - 배움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평생교육 실현의 기본 단위인 264개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3,502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과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및 확대 배치를 제안함
 - 이러한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이 확장되고 공공적 일자리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된다면 국민의 삶 전체에 걸친 질 높은 학습을 책임질 것이며 그 결과는 학습 시민의 거듭남으로 돌아올 것임
 - 이를 위해 264개의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를 위한 우선적 과제로서 현행 법의 개정이 필요함. 현재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율적 설치 또는 지정에 의해 이루어짐
 - 이는 평생학습관이 국가재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관을 도서관, 청소년 및 문화시설 등과 같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04. 28.]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 제1항 단서 관련)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1조 3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지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연차별 조성 개수를 5년의 기간 동안 3,502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 3,502개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평생학습센터화 될 때 누구든지 근거리 학습망에 노출될 수 있는 전 생애 학습이 의무이자 권리인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능할 것 임
- 이렇게 1도시 1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면 최소한 4,000여개의 평생교육사 공공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 2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연차별 조성 제안

평생학습운영체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수	373개	999개	1,624개	2,249개	2,874개	3,502개

□ 평생교육사 공공 부문 배치 기준 강화

- 국가는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진흥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였음. 평생교육사는 민간자격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이며 국가가 자격을 부여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기관,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책임져야 할 국가단위, 광역시도 단위, 기초 시·군·구 단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부서와 같은 공공 영역 조차도 배치 기준을 보면 기본 정도에 불과할 정도임
- 우선적으로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을 강화 할 것을 제안함

〈표 27〉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제안

배치대상	배치 기준 제안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직원의 50% 이상 평생교육사 배치
2. 기초자치단체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 인구 5만 이하 2명, 10만명당 평생교육사 1인 필수 배치 (시군구 264개, 총 배치인원 1,019명)
3. 교육청, 교육지원청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6. 기타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민간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강화

- 공공영역의 평생교육 진흥이상으로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가 중요하며, 자칫 공공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평생학습의 균형적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또한 학습 시민과 민주 시민을 지향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의 본질과 철학이 왜곡될 수 있음
- <표 28>를 참조하면 민간영역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거의 1천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숫자임
- 그런데 평생교육사의 채용 수준이 기관 당 평균 1명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전 생애 학습의 의무와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고용확대를 위한 배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표 28> 민간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제안

배치기준	배치 기준 제안
1. 등록 학습자수 기준(연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학습자수 500명 이하 평생교육사 2명 배치 ○ 이후 500명당 1명씩 배치 인원 증가 ○ 5,000명 이상은 12명 이상으로 최소 배치 인원 제시

- 민간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배치 시 정부에서 월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 또한 고려할 만하며, 재정적으로 넉넉한 민간 시설이 많지 않기에 정부의 임금 지원은 평생교육사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임
- 또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데 있어 고용의 질제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사의 채용 숫자를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제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평생교육사의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규정이나 조건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즉, 4대 보험 적용 여부, 퇴직금 지급 적용, 고용 및 승진 관련 규정 구체화 등 기타 처우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강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배치 기준 미준수시 벌금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등 처벌조항 또한 함께 고려하여 평생교육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V. 결론

1. 논의

2. 제언

1. 논의

-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공공영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일반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과 민간영역은 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학점은행제 기관,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 등임

- 평생교육사 배치가 공공영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1명~2명 정도의 평생교육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영역에서 평생교육업무를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음

- 공공영역의 평생교육 전담업무가 비전문가로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 평생교육 업무에 평생교육사 배치 필요성이 요구됨

-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 공공영역에서 평생교육전담인력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소지자보다는 일반행정직공무원의 배치로 인해 정책추진 및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 안정성이 결여됨
 - 그러므로 인해 안정적인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확보와 전문성담보를 위해 평생전담공무원 직렬편성 추진이 요구됨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유한 평생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시민의 생애역량, 삶의 질 및 시민의 평생학습을 주도하리라 기대됨

□ 평생교육사 직무역량 강화교육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DB를 구축하여 연계하여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 마련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 영역의 ‘기획·개발’ 영역과 직무요소의 교육요구 분석과 학습자관리 및 교수자 섭외 등 기관운영능력 배양해야 함
- 효율적인 역량강화 교육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함

□ 평생교육 현장에 평생교육법 제26조의 2에 의한 평생교육사 확대 배치가 요구됨

- 평생교육법 제26조의2
 - 평생교육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함
 -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 행복학습센터, 마을 만들기 실천 현장, 유사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등)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실태조사

□ 평생교육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 공공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이 필요함

-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생활·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학력보완 교육 제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학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균형발전 추구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의체 구성
- 공공영역과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재편은 민간영역의 다양성 훼손 우려
- 민간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 평생교육이 발전하여 지역문화로 성장할 수 있음
- 공공영역은 정책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평생교육의 허브역할을 하고 민간영역은 시민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

2. 제언

1) 평생교육사 고용 증진 방안

-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공공 평생교육 시설의 성장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공무원 직렬화해야 함

-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당교사제를 신설해야하며 민간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과 학점은행제 참여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원격 대학 등의 기관에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각종 지원의 조건으로 평생교육사 배치를 유도함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현안 및 발전방향¹⁶⁾
 -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성·자율성 등 업무의 권한 조정이 필요
 - 효율적인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해서는 진흥원의 특징을 반영한 특화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공유 및 확산이 필요하며 조례 제정 등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유관기간과의 관계에 있어 허브 역할 수행
 -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경쟁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서 간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중심의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16) 2015, 국가-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성과 및 발전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전문성 강화
 - 평생교육 기반 및 기초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전담인력의 확보, 기존 단위기관의 속성에 벗어나 지역 전체의 평생교육기관 단체를 지원하는 종사자 연수,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등을 수행해야 함

□ 법·제도 개선

-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기준 확대
 - 직원 정원대비가 아닌, 학습자 대비, 프로그램 대비
 - 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
- 평생교육사 고용 안정화 방안(지속성, 전문성)
 - 공무원의 직렬화로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DB구축

- 평생교육 DB는 유관 기관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되고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되는 DB는 실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광주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DB구축 필요
 - 정책 연구와 그에 기반 한 DB구축 작업 병행
- 진흥원은 직접 사업 비중 축소하고 정책연구, 정보 수집과 제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이에 기반 한 사업추진

-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사 직업에 대한 인식 활성화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평생교육사 역할, 직무를 비롯한 평생교육사의 미래 전망 등에 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각 급 학교에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로 인한 학교자원 활용 및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로 교육복지담당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또는 학교 평생교육 담당자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함

- 평생교육사의 자질 함양과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 및 영역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평생교육사 양성 및 고용 증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및 연구가 필요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2) 지역밀착형 평생교육

-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 유관 기관의 사업과 연계 운영이 필요
 -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잠재된 유휴시설을 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
 - 생활 속 학습 문화 도모와 지방자치단체 진행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과 연계된 사업을 해야 함

- 평생학습은 성숙한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로 지역 주민이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교육 등이 필요함

- 문화예술 교육은 인성, 창의성, 감수성 및 문화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 음악, 미술, 스포츠 등 학문적인 융합도 필요함

-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진행을 제언함. 이는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로 취미·오락 등 시간 보내기 식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함

- 일자리 연계를 위한 Step by step 교육
 - 평생교육의 점진적 성장을 위한 기초, 심화, 응용과정 등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실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평가되어야 함

-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
 - 평생교육을 통해 향토 문화예술 창달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역사를 발굴하여 지역문화로 발전 및 연계
 - 마을단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을 역사를 발굴 육성

- 찾아가는 평생교육
 -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무지개 프로그램 운영

□ 영역별 특화된 평생교육사 양성

- 지역 평생 교육 전문인재로서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 지원
- 기관 특성 및 지역 인구 등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 영역별 특화된 평생교육사 양성 즉, 다문화, 노인, 장애인 등

3) 전 생애, 삶의 학습시대

- 삶 전체에 걸친 학습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임. 교육을 통한 국민의 행복권,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더 이상 학교교육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 언제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로의 전환, 생애단계별 맞춤형 역량을 일구어 내는 창조적인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요구됨
-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듯이,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학습은 세상을 향해 스스로를 올곧게 드러내며 국민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도록 할 것임
- 학습이야말로 깨어있는 시민, 생각하는 시민, 질문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으로 가는 시작임
- 평생교육사는 세상을 이끄는 평생학습, 전 생애적 교육을 통한 희망의 세상을 만들고자 함. 국민의 선택에 의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교육문제의 해법을 평생학습에서 그 단초를 찾기를 기대함

□ 광주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당면과제

-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 경력별 등 다양한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함
-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이 아닌 체계적인 장기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편성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함
- 평생교육사로 활동할 때 겪는 기관 또는 주민들과의 마찰 등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 법적, 제도적 문제까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함
- 타 지역의 평생교육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광주 평생교육 유관기관이 평생교육사들의 허브역할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참고문헌

- Brockett, R. G.(1989). Professional Associa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IN S. B. Merriam and P. M. Conningham(eds.). *Handbook of Adult Contiuning Education. No. 51*. San Francisco : Jossy-Bass.
- Duke, C.(1987). Training of Education. Titmus. C.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 An International Handbook*. Oxford : Pergamon
- Jarvis, P., Peter, A., & Chadwick, A. (EDT) (1991). *Training Adult Education in Western Europe*, Oxford : Routledge.
- UNESCO(1985). The development of adult education : Aspects and trends.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 on adult education. Paris : UNESCO.
- 강대중 외(2017),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발전 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조사 결과보고서(2017),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광명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2017), 광명시.
-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조례 제5090호.
- 구혜정(2003),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2017),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공청회 자료집,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8글로벌평생교육동향 Vol.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제3차 성인학습과 성인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수원-오산 선언문.
-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조사 결과보고서(2017),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규태 외(2017), 교육사회학, 공동체출판사.
- 김인록(2018), 평생교육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일태(2018), 일자리경제 민선7기 일자리 정책과 일본 평생교육의 사회공헌.

김철진(2017),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2017),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_____ (2018), 매당기행, HK2출판사.

대전평생교육정책포럼 6차 자료집(2013).

배봉균(2014), 경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변종임 외(2012),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수립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을 모색한다(2017),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2017), 평생학습·서울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양병찬(2017),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창립대회.

윤여각·정민승·오혁진(2011). 평생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경화 외(2017), 평생교육론, 태영출판사.

이천시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7), 천시.

이희수(2018), 2018 국가평생교육정책을 들여다보다, 2018 제1차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일자리 창출 사례(2018), 광주평생학습주간 DAY2-평생교육포럼 자료집, 민선7기 정책방향과 평생교육의 역할.

조희옥(2002), 평생교육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8),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자료, www.lifelong.kedi.re.kr.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홈페이지(2017), <http://kale.or.kr>.

2016교육통계분석자료집(2016),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평생교육백서(2018),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록

광주광역시평생교육기관
분야별 사무원 배치 현황

광주광역시평생교육기관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 분야별 사무원 배치 현황

<표 1>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 분야별 사무원 배치 현황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여
전체		499	279
광주광역시	대학(원) 부설	58	19
	원격 형태	98	55
	사업장 부설	47	36
	시민사회단체 부설	47	20
	언론기관 부설	73	39
	지식인력개발형태	66	43
	평생학습관	97	60
	평생교육진흥원	13	7

□ 행정구별 성별 사무직원수 / 대학(원)부설

<표 2> 대학(원)부설 성별 사무직원수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여
전체		58	19
광주광역시	동구	8	3
	서구	5	2
	남구	13	4
	북구	22	8
	광산구	10	2

□ 행정구별 성별 사무직원수 / 원격형태

〈표 3〉 원격형태 성별 사무직원수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여
전체		98	55
광주광역시	동구	10	4
	서구	32	23
	남구	7	5
	북구	49	23

□ 행정구별 성별 사무직원수 / 사업장부설

〈표 4〉 사업장 부설 성별 사무직원수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유통업체문화센터		산업체부설	
		계	여	계	여	계	여
전체		47	36	47	36	-	-
광주광역시	동구	4	3	4	3	-	-
	서구	17	13	17	13	-	-
	북구	7	5	7	5	-	-
	광산구	19	15	19	15	-	-

□ 행정구별 성별 사무직원수 / 시민사회단체부설

〈표 5〉 시민사회단체부설 성별 사무직원수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여
전체		47	20
광주광역시	동구	8	3
	서구	8	4
	남구	3	-
	북구	21	10
	광산구	7	3

□ 행정구별 성별 사무직원수 / 언론기관부설

<표 6> 언론기관부설 성별 사무직원수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여
전체		73	39
광주광역시	동구	6	2
	서구	12	5
	남구	13	5
	북구	27	16
	광산구	15	11

□ 행정구별 성별 사무직원수 / 지식인력개발형태

<표 7> 지식인력개발형태 성별 사무직원수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여
전체		66	43
광주광역시	동구	7	5
	서구	31	21
	남구	8	5
	북구	18	11
	광산구	2	1

□ 행정구별 성별 사무직원수 / 평생학습관

<표 8> 평생학습관 성별 사무직원수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여
전체		97	60
광주광역시	동구	15	11
	서구	37	19
	남구	9	5
	북구	15	11
	광산구	21	14

□ 행정구별 성별 사무직원수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표 9〉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성별 사무직원수

구분		사무직원수	
		전체	여
전체		15	7
광주광역시	광산구	15	7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재직·배치 일반 현황

〈표 10〉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재직·배치 일반 현황

연번	2018년 기관명	기관전화번호	평생교육사 배치여부 Y정직, 비정규/N	평생교육사 담당이름	비 고
1	광주발전연구원 (부설광주평생교육진흥원)	940-0504	정직5		
2	전남대평생교육원	530-3873	정직1 무기직1	한OO	
3	조선대평생교육원	230-7700	정직3 계약직1, 인턴1		
4	광신대평생교육원	605-1112	정직1비정규직1	김OO	
5	광주교대평생교육원	520-4243	정직1	정OO	
6	남부대평생교육원	970-0080	비정규1	이OO	
7	호남대평생교육원	380-8400	정직1	이OO	
8	송원대평생교육원	360-5889	정직1	박OO	
9	보건대평생교육원	958-7572	정직1비정규직2	이OO	
10	서영대평생교육원	520-5229	정직1	정OO	
11	조선이공대평생교육원	230-8122	정직1	황OO	
12	동강대학평생교육원	520-2518	정직1무기직1		
13	광주카톨릭대평생교육원	380-2200	정규직2	박OO	
14	호남신학대학교평생교육원	650-1517	계약직1	박OO	
15	광주대학교평생교육원	670-2167	정직1계약직1	김OO	
16	광주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950-3584	정직1	윤OO	

17	NC백화점광주점 평생교육시설	510-8151	정직2	문OO, 채OO	
18	롯데광주점일반문화센터	221-1811	정직1	양OO	
19	홈플러스평생교육아카데미 동광주점	250-8003	정직1	장OO	
20	신세계아카데미	360-1500	정직2	유OO	
21	롯데마트상무점문화센터	602-2590	정직1	김OO	
22	롯데마트월드컵점문화센터	610-2590	정직1		
23	홈플러스광주하남점평생교 육아카데미	616-8005	정직1		
24	롯데마트 문화센터 수완점	975-2500	정직1		
25	이마트광산점문화센터	949-1250	정직2	오OO	
26	이마트상무점문화센터	610-1250	정직2	김OO	
27	농협하나로문화센터	650-0108	정직1	이OO	
28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사 평생교육원	521-0546	정직5		
29	광주평생교육원	522-3366	운영안함	공OO	
30	한국교육개발지원센터	521-3372	정직1		
31	COSMOS평생교육원	522-1673	정직1		
32	국제평생교육원	264-8866	정직3		
33	총신평생교육원	1577-9175	정직3 비정규직3	고OO	
34	글로벌메카평생교육원	266-9711	N	지OO	
36	광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생교육원	522-8301	정직원1명예직1 비정규1	박OO, 김OO	
37	SAFE평생교육원	431-3373	정직1		
38	아시아문화학술원부설 평생교육원	449-0623	정직1	김OO	
39	한국문화평생교육원	961-8209	정직1		
40	한국방과후평생교육원	681-0980	정직1비정규직3		
41	남도비전평생교육원	681-7722	정직3비정규2	백OO	
42	새날평생교육원	943-8930	N	이OO	

43	그루티기평생교육원	682-0191	N	박OO	
44	행복평생교육원	959-0005	정직1비정규3	최OO	
45	글로벌리더평생교육원	651-6611	계약직1		
46	문화예술디자인평생교육원	374-6660	정직1		
47	무지개평생교육원	374-7117	정직1		
48	청산평생교육원	525-2491	정직1		
49	회복평생교육원	576-0190	정직2		
50	덕성평생교육원	225-3253	정직1		
51	행복한평생교육원	264-3174	정직1		
52	광주전남평생교육원	521-5186 /5180	정직1		
53	광주북구평생교육원	571-0863	정직1		
54	진향평생교육원	262-7750	N		
55	광주전통문화평생교육원	234-7487	정직1		
56	한울평생교육원	527-5253	정직1		
57	심안평생교육원	515-5000	정직1		
58	한국복지인재교육원	227-9599	정직1		
59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	269-6669	정직3비정규2		
60	리더스평생교육원	524-0060	정직1비정규3		
61	모두사랑평생교육원	524-8111	정직1		
62	한국평생교육원	222-0841	정직1		
63	한국인재평생교육원	521-0056	정직1		
64	한국애니타임아카데미평생 교육원	430-9765	정직1비정규2	김OO	
65	엔에스평생교육원	514-9398	정직1		
66	주)폴리엠서구평생교육원	675-8586	정직1	김OO	
67	로렌츠광산평생교육원	961-7080	정직1		
68	한국쉐마평생교육원	351-3477	정직1		
69	사회단체대한노인복지연합	654-3465	정직1		

	회(부설) 백연평생교육원		비정규직4		
70	중앙평생교육원	716-3556	정직1		
71	와이비(YB)평생교육원	371-2390	정직1비정규3	오OO	
72	첨단평생교육원	974-4309	정직1 비정규직4		
73	생각나무평생교육원	676-0675	정직1		
74	비엔케이평생교육원	515-3711	정직1		
75	누리평생교육원	682-7040	정직1		
76	한평생평생교육원	511-5057	정직1		
77	케이제이원격평생교육원	526-9031	정직1		
78	이엔케이원격평생교육원		정직1		
79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	1688-7279	정직2 비정규직3		
80	송강원격평생교육원	511-2433	정직3비정규2		
81	한교정보원격평생교육시설		없음		
82	조선대학교원격평생교육원	230-7700	정직2비정규3		
83	용봉패스원격평생교육원	070-8672-1734	정직1		
84	HRD 에듀센터 평생교육원	252-2929	정직1		
85	아이에듀원격평생교육원	529-5889	정직1		
86	(주)세종엠비션교육사업부원 격평생교육장	233-2530	정직1		
87	광주중앙원격평생교육원	522-3727	정직2비정규3		
88	지에이치평생교육원	434-8026	정직1		
89	이비즈업	366-5490	정직1		
90	광주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670-2608	정직1		
91	성인원격평생교육원	372-8302	정직1		
92	스퀘어에듀원격평생교육시설	02-1599-2605	정직1		
93	우리인재개발원	400-0600	정직1		
94	두리사랑평생교육원	351-0075	정직1		

95	중앙지식인력평생교육원	526-0142	정직1		
96	하늘마음수련평생교육원	521-3380	정직1		
97	한국예술종합평생교육원	223-0444	정직4		
98	아카데미평생교육원	522-1216	정직1		
99	나들목평생교육문화센터		없음		
100	중앙평생교육원	526-0715	정직1 비정규2		
101	예일평생교육원	523-1199	정직1비정규직4		
102	참빛평생교육원	522-0101	정직1 비정규2	윤OO	
103	미래평생교육원	524-3300	정직1		
104	한솔미래교육문화원		정직1		
105	한국경영원인재개발원	720-4800	정직1		
106	대성평생교육원	529-8384	정직1		
107	대원평생교육원	062-572-8585	정직1		
108	한솔브레인아카데미	655-4500	정직1		
109	앞서가는평생교육원	385-8588	정직1		
110	광주영어마을평생교육원	385-0733	정직1		
111	광주리더십센터	366-5490	정직1		
112	SKC평생교육원	232-2377	정직1		
113	제이엔제이평생교육원	951-0555	정직1		
114	한국교육기술원 평생교육센터	070-7525-4701	정직1		
115	이(e)-조은인재개발 평생교육원	381-1482	정직1		
116	중앙교육개발원주식회사	371-2390	N		
117	드림평생교육원	526-9696	정직1계약직4		
118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221-5562	N		
119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380-8853	N		
120	광주중앙도서관	607-1338	정직1비정규1		

121	광주송정도서관	940-8935	정직1	김OO	
122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373-0946			
123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351-0296	정직1 비정규2	주OO	
124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	654-4321	무기직2	박OO	
125	사단법인우리문화예술원	523-0474	정직1 비정규2	신OO	
126	광주향교	672-7008	N		
127	광산구침단종합사회복지관	971-9500	정직1 비정규2	최OO	
128	(사)양지종합사회복지관	070-4012-1449	정직1 비정규2	김OO	
129	(사)인애종합사회복지관	676-5087	N		
130	(사)엠마우스복지관	524-7702	N		
131	(사)이주가족복지회	363-2963	N	이OO	
132	동구평생학습센터	608-2323	N		
133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410-8395	정직1		
134	광산구평생교육원	960-8285	정직1 비정규2	김OO	
135	서남동행복학습센터	608-2323	N		
136	동명동행복학습센터	608-2323	N		
137	지원1동행복학습센터	608-2323	N		
138	사직동행복학습센터(거점)	607-2431	정직1		
139	봉선2동행복학습센터	607-2431	정직1		
140	효덕동행복학습센터	607-2431	정직1		
141	대촌동행복학습센터	607-2431	정직1		
142	한새봉두레	575-0306	정직1		
143	배움평생교육강사협동조합	574-3378	정직1	문OO	
144	북구문화의집	269-1420	정직1	정OO	
145	원당숲어울마루	960-7997	정직1	윤OO	
146	무양서원작은도서관	960-3234	N		
147	신창동 주민자치센터	010-2993-4728	N		

149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672-7789	정직1비정규2	진OO	
150	디딤돌장애인야학	070-4112-8025	정직1		
151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062-229-9700	정직2		
152	광주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062-373-0942	N		
153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062-380-8853	N		
15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062-221-5500	N		
155	금호평생교육관	062-360-6600	정직1		
156	(사)대한안전협회	062-222-0841	정직2	정OO	
157	무등종합사회복지관	062-268-0093	N		
158	사단법인한국예술진흥회	062-521-3372	정직1		
159	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서구지부	02-461-2261	N		
160	휴먼평생교육원	062-513-3341	N		
161	기독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062-650-8000	정직1무기직1		
162	MOST 행복센터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062-673-5678	N		
163	광주멘토아카데미 평생교육원	062-401-7979	정직1		
164	와이필라테스평생교육원	062-515-5000	N		

구청별 도서관 현황

1	북구청 도서관현황	062-410-8000 410-6951	총123개 공립22, 사립101	평생 교육사 없음	
2	광산구청 도서관현황	062-960-8114 960-8548	총111 공립9, 사립102		
3	동구청 도서관현황	062-608-2114 608-2327	총13 공립3, 사립10		
4	서구청 도서관현황	062-365-4114 360-4587	총77 공립4 민간기관의탁2 작은도서관71		
5	남구청 도서관현황	062-651-9020 607-2513	총65 공립14 작은도서관51		

※ 본 자료는 연구자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각 구청 평생교육 담당자와 면담 후 기관별 명단을 작성하고 이후 각 기관별 면담으로 자료를 완성함을 밝힘. 각 구청별 도서관 현황은 구청별 작은 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통해 자료를 입수 후 전화 면담으로 자료를 완성함.

□ 국가 및 지자체

<표 11> 국가 및 지자체

번호	기관명	주소	비고
1	동구청	광주 동구 서남로 1	
2	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4 (화정2동 주민센터 지하)	
3	남구청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4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5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광산로29번길	
6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7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중흥2동)	
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	

□ 동구청

<표 12> 광주광역시 동구청 현황

기관명	동구청				
기관주소	광주 동구 서남로 1				
대표전화	062) 608-2324		담당자연락처	608-2324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자격유무	비고
원장					
직원	송○○	공무원 연금	전임계약	유	
직원	박○○	국민연금	공무직 (무기계약)	유	
강좌명 (18.3.1.~ 현재)	2018년 하반기 동구아카데미인문학교실, 동구남성요리교실5기, 2018동구인문학교실, 2018동구아카데미				

□ 서구청

〈표 13〉 광주광역시 서구청 현황

기관명	서구청(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4(화정2동 주민센터 지하)				
대표전화	062)350-4970~4			담당자연락처	062)350-4972
보직	성명	연금 가입	고용 형태	평생교육사 자격유무	비고
과장	김○○	공무원연금	정규직		
직원(팀장)	최○○	공무원연금	정규직		
직원	임○○	공무원연금	일반임기제	○	
직원	곽○○	공무원연금	정규직		
직원	강○○	공무원연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	
직원	김○○	국민연금	공무직		

강좌명 (18.3.1.~ 현재)		P/G 명		P/G 명
	1	통섭의 인문학	21	동양철학이 지혜를 품다(다산 정약용)
	2	동양철학이 지혜를 품다(노자-도덕경)	22	긍정과 행복의 치유 인문학
	3	소크라테스 대화법 - 대화능력을 키우는 대화	23	북아트와 함께하는 한국사 탐험(조선 II)
	4	북아트와 함께하는 한국사 탐험(조선 I)	24	서구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5	니를 찾아 떠나는 여행	25	사례로 보는 갈등해결
	6	영상으로 배우는 인권교실	26	문화재지킴이 활동가 양성과정(심화)
	7	우리가 만드는 마을기획	27	사랑스런 손자녀 돌봄교실
	8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갈등해결)	28	우리마을 식물도감 만들기(운천호수)
	9	시니어(50+)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29	시니어(50+)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10	100세 시대 건강장수! 내가 좌우한다.	30	은빛 미술봉사단 양성과정
	11	우리마을 식물도감 만들기(풍암호수)	31	목공 DIY 전문가 양성과정
	12	시니어(50+)를 위한 인생설계	32	서구 설화야? 그림책이 되자!
	13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터치 양성과정	33	김승일 교수가 초대하는 「클래식 행복」
	14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코칭(심화)	34	내 손으로 홍보 전단지 만들기 「웹 자보」
	15	김승일 교수가 초대하는 「클래식 행복」	35	시민 연극 교실 「나도 배우다」
	16	사랑스런 반려견 용품만들기	36	자연과 건강(산야초 이야기)
	17	감성을 담은 캘리그래피	37	「서각」의 이해와 실제
	18	연필이랑 그림이랑(연필소묘)	38	전통무예를 통한 몸 다스림
	19	평생교육 실무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실습	39	준비된 결혼이 아름다운 「명품 예비부부학교」
	20	대중문화로 힐링하라!(Old pop)	40	신(新)중년을 위한 인생찾기

□ 남구청

<표 14> 광주광역시 남구청 현황

기관명	남구청(평생학습관)				
법령에 따른 시설 분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6진분류	시민참여교육 06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대표전화	062) 607-2434.5		담당자연락처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자격유무	비고
직원	김○○	국민연금	무기계약	유	

□ 북구청

<표 14> 광주광역시 북구청 현황

기관명	북구청				
법령에 따른 시설 분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6진분류	시민참여교육 06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대표전화	062) 410-8000		담당자연락처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자격유무	비고
원장	국○○	공무원 연금	계약직	유	
직원	조○○	공무원 연금	공무원	무	
직원	서○○	공무원 연금	공무원	무	
직원	최○○	공무원 연금	공무원	무	
직원	김○○	공무원 연금	공무원	무	
강좌명 (18.3.1.~ 현재)					

□ 광산구청

〈표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현황

기관명	광산구청				
법령에 따른 시설 분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6진분류	시민참여교육 06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광산로29번길 위치				
대표전화	062)960-8114		담당자연락처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자격유무	비고
대표	김○○	○	선출공무원	무	
과장	김○○	○	일반공무원	무	
팀장	임○○	○	일반공무원	무	
직원	김○○	○	일반임기제 공무원	유	5년마다 계약 갱신
직원	이○○	○	일반공무원	무	
직원	김○○	○	시간선택압기 제공무원	무	
강좌명 (18.3.1.~ 현재)		꿈에뽀짝 지도사 과정 등 13개 사업 운영			

(2) 평생교육진흥원

<표 16>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번호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광주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표 17>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기관명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법령에 따른 시설 분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6진분류	시민참여교육 06		
기관주소	광주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대표전화	062) 600-5233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자격 유무	비고
원장	이계윤				
직원	직원 15명 근무 중 평생교육사자격증 소지자 9명 (2018. 12. 20 現)				
강좌명 (18.3.1.~ 현재)	2018수중체육활동스쿠버다이빙, 스피치클리닉, 예쁜글씨POP·캘리그라피, 서예교실, 여행중국어회화,건강요가, 의류수선봉제로 소득UP생활UP, 기질심리학전문가과정, 옥상베란다텃밭가꾸기, 웃음운동지도사과정, 화훼장식(플로리스트), 민요춤제조지도사, 신바람노인건강체조1급지도사, 멋진여행과사진(야), 멋진여행과사진(주), 서예(중급), 서예(초급), 토탈캘리그라피, 감성캘리그라피, 색소폰&클라리넷, 기초부터배우는연필인물화, 유화&수채화, 난타, 생활검도와 호신술, 호남살풀이 한국무용, 한국전통춤(초급), 한국전통춤(중급), 신나는 배드민턴, 힐링요가&필라테스, 참 나를 아는 마음공부, 역사하브루타지도사, 토니 및 상가투자전략, NLP투자비법과 경매(야간), NLP투자비법과 경매(주간), 드론교육지도사, 감성스피치과정, 한자한문지도사(특급), 한자한문지도사(초급), NIE(신문활용교육)지도사, 학습코칭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2급, 심리상담사2급, 독서토론지도사(야), 독서토론지도사(주), 제4차산업혁명인재를 위한 독서지도사, 부동산경매실무, 빅데이터활용전문가과정, 컴퓨터활용능력2급, 메이크업(국가자격증), 네일(국가자격증), 네일(아트&창업), 초등학교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3단계), 초등학교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2단계),초등학교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1단계), 서예교실, 스피치클리닉(야), 여행중국어회화, 건강요가, 영어랑 동화랑 기타등등 (5)				

(3) 평생학습관

<표 18>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현황

(평생학습관 지정기간 : 2017.3.1 ~ 2019.2.28)

구분	유형	기관명	기관장	주소	대표전화	팩스	담당자
직권지정 (5개관)	교육청 소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박○○	서구 학생독립로 30	062-221-5500	062-221-5500	구○○
		금호평생교육관	심○○	남구 중앙로 15	062-360-6635	062-360-6639	박○○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박○○	서구 상무민주로 61			
		광주중앙도서관	강○○	동구 장동로 23-16	062-607-1300	062-607-1366	김○○
		광주송정도서관	문○○	광산구 송정공원로 8-13	062-940-8900	062-944-9412	김○○
공모지정 (12개관)	자치 단체 소속 민간 사회 단체	광산구첨단종합사회복지관	김○○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	062-971-9500	062-971-9506	장○○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이○○	남구 용대로 91	062-676-5087	062-675-9908	최○○
		한국농아인협회광주협회	김○○	서구 상무대로 924			
		엠마우스복지관	김○○	북구 북문대로 20번길 38	062-524-7701	062-526-2799	박○○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이○○	북구 삼정로 10	062-268-0093	062-268-0094	전○○
		광주광역시동구청애인복지관	장○○	동구 백서로 198번길 7	062-229-9700	062-229-9704	고○○
		대한안전연합	정○○	서구 영화로31번길 5	062-222-0841	070-4009-3343	주○○
		아우비숲평생교육원	전○○	북구 우치로15			
		광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윤○○	북구 금남로99 수창초교(내)	062-522-8301	062-522-8303	김○○
		글로벌리더평생교육원	조○○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36	062-651-6661	062-651-6661	조○○
		한국예술종합교육원	김○○	동구 서석로 89	062-223-0444	062-223-0422	이○○
		예일평생교육원	오○○	북구 금남로 98번길 11	062-523-1199	062-523-1198	배○○

□ 광주광역시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대학)

<표 19>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대학교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대표전화	062-605-1112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김○○	사학연금	정규직	유	전임교수
직원	전○○	사학연금	정규직	무	
직원	김○○	사학연금	정규직	무	
강좌명(18.10.현재)			없음		

2018.10. 현재

<표 2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국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교육대학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대표전화	062-520-4243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홍○○	공무원연금	정규직		
팀장	정○○				
직원	강○○				

강좌명
(18.10.현재)

가야금, 감성과자아를깨우는정서코칭상담사, 강형배노래교실, 고품격스피치아카데미, 김은희의음치클리닉(마음으로부르는노래), 독서심리마스터, 두뇌로수학, 디지털사진(중급), 디지털사진(초급), 라틴춤바댄스, 미술심리치료, 바리스타기초반, 바리스타전문가반, 사랑을부르는오카리나(중급), 색소폰 자격증반, 시낭송지도사(1급), 시낭송지도사(2급), 실전부동산경매와공매재테크, 아름다운성악콘서트바토리, 영어독서지도사, 오카리나지도사(2급), 우리춤, 우쿨렐레음악지도사(1급), 우쿨렐레음악지도사(2급), 웃음운동지도사과정, 원예치료사양성과정, 웰빙사찰음식과천연식초관리사, 음악전래놀이지도사, 전통무용허튼춤, 전통민화, 전통춤(교방입춤), 진도북, 통기타교실, 트레몰로하모니카, 플레이팩토먼슬리방과후지도사교육과정, 플루트전문지도사과정, 필름사진(초급), 하모니카, 한자.한문지도사(중급), 한자.한문지도사(특급), 힐링플랜테리어전문가

〈표 21〉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대학교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대표전화	062-670-2168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조○○	사학연금	정규직	무	
팀장	양○○	사학연금	정규직	유	
직원	서○○	-	계약직	유	
강좌명 (18.10.현재)	DIY이동식전원주택짓기, GU골프 아카데미, 고전명리정설 중급, 고전명리정설 초급, 골프,교육 레크리에이션, 국악, 기초부터 배우는 연필인물화, 기타교실, 꽃차 소믈리에 3급, 나의 스피치 스타일 찾기, 드론조종자격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디지털 사진촬영과 포토샵 기초, 디지털 사진촬영과 포토샵 심화, 무봉선사와 함께하는 달마그림 그리기, 미술심리상담사(기초+심화통합), 바리스타양성과과정, 부동산 경매, 부동산 성공투자 교실, 부동산경매 이론 및 실전,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사진아카데미 (예술반), 사진아카데미 (창작반), 서양화(유화), 서예(붓글씨), 수기요법-스포츠마사지(초급,중급), 스마트폰 활용과 영상제작, 신비한 타로, 아로마캔들&천연비누, 화장품만들기, 약용식물자원관리, 언어감성놀이 스토리텔링, 웃음운동지도사,폼아트 지도사 2급,풍수지리 실제, 풍수지리 종합반, 한국화(수묵화), 한자·한문지도사(2급)				

〈표 22〉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전문대학	학교유형	전문대학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73 (신창동)				
대표전화	062-958-7500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이○○	사학연금	정규직	무	
과장	주○○	사학연금	정규직	무	
직원	이○○	국민연금	계약직	유	
직원	봉○○	국민연금	계약직	유	
직원	박○○	사학연금	정규직	유	
강좌명 (18.10.현재)	물리치료사를 위한 세라밴드 및 스위스볼 운동, 신바람 난타, British English conversation, New approach to English, 언어 스피치로 자신감UP '성격'을 바꾸자!, 예술사진 초,중급반, 산림치유지도사, 학점은행제				

<표 22>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대학교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산정동)				
대표전화	062-950-3583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박○○	사학연금	정규직	무	
주무팀장	오○○	사학연금	정규직	무	
팀장	박○○	사학연금	정규직	무	
직원	윤○○	사학연금	정규직	유	
직원	김○○	사학연금	정규직	무	
강좌명 (18.10.현재)	4차산업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독서지도사, SW코딩&EV3강사 양성과정, 감성스피치, 기초부터 배우는 연필인물화, 난타, 네일(국가자격증), 네일(아트&창업), 마음챙김 명상+MBSR, 메이크업(국가자격증), 부동산경매실무,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 전문가 과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입지 및 상권 분석 과정, 생활검도와 호신술, 서예(중급), 서예(초급), 신바람노인건강체조/밴드스트레칭 지도자, 심리상담사 2급, 약용식물자원관리사, 역사하브루타지도사, 웃음운동지도자과정, 유화&수채화, 음악/실버레크레이션 지도자, 팝아트 초상화, 포크아트와 풍경, 한국전통춤(중급), 한국전통춤(초급), 한자한문지도사, 호남살풀이 한국무용, 화훼장식(플로리스트), 미용전공 학위과정, 보육교사2급 학위과정, 사회복지사2급 학위과정				

<표 24> 기독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기독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전문대학	학교유형	전문대학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70번길 6 (양림동)				
대표전화	062-650-8021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전○○	사학연금	정규직	무	
직원	이○○	국민연금	계약직	유	
직원	최○○	사학연금	정규직	유	
강좌명(18.10.현재)			전공심화 학위과정		

<표 25>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대학교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622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대표전화	062-970-0080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최○○	사학	정규직	무	
직원	이○○	사학	정규직	무	
직원	김○○	사학	정규직	무	
강좌명 (18.10.현재)	DIY이동식전원주택짓기, SW코딩 강좌, 감성 일러스트, 경매재테크(법원경매, 특수경매, NPL 등), 골프아카데미, 그린인테리어-베란다정원, 미술심리치료사,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과정, 배꼽호흡테라피, 법원실전경매 초보자과정, 부부 행복만들기, 사주명리학(입문반), 사주명리학(지지반), 사진 촬영 기법(고급), 사진 촬영 기법(중급), 사진 촬영 기법(초급), 생활역학(기초과정), 생활역학(통변과정), 성공 부동산 재테크, 성악아카데미, 수기식물대체의학최고전문가과정(2년과정), 쉽게 배우는 여행스케치, 약용식물 그리기, 약용식물관리사, 예술재활심리사 2급 과정, 원예치료사양성과정, 음악재활심리사 2급 과정, 임대사업 창업을 위한 민사소송과 경매실무, 전통 민화, 창작에세이(수필)학, 클래식 기타, 타로심리 상담 활용 기본, 토탈 한국화 교실, 토탈 한글서예, 통합예술치료, 파워필라테스, 포크기타교실(중급), 포크기타교실(초급), 풍수지리, 한방차&발효식초요법, 향토음식지도사 1, 2급 과정, 화장품 산업지도사(교육강사 2급) 정규과정				

<표 26> 동강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동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전문대학	학교유형	전문대학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대표전화	062-520-2300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유○○	사학연금	정규직	무	
직원	주○○	국민연금	무기계약	유	
강좌명 (18.10.현재)	ATC CAD 대비반, ZUMBA댄스, 결혼심리상담사, 나만의 인형만들기-틸다인형, 내손으로 만드는 명품-디자인 가죽공예 백팩 만들기, 노인심리상담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경매재테크, 모던 민화(전통채색화), 방과후 공예지도사, 사교댄스-중급, 사교댄스-초급,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고급,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중급,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초급, 색소폰 기초, 스마트하게 업무처리하는 스마트 워커 과정, 시낭송지도사, 야생화 자수, 어린이책 스토리텔러 3급, 와인 소믈리에, 웃음&유머&레크를 통한 정신힐링 과정, 전산회계 1급 대비반, 전통차예절지도사, 조주기능사, 천연비누제조사, 캘리그래피, 커피바리스타 2급, 풍류문화와 신명나는 판소리, 풍선아트2급+페이스페인팅3급, 풍수지리와 수맥, 하모니카 초,중급, 헬스 웨이트, 현대사주명리학-중급, 현대사주명리학-초급, 힐링자연치유사, 학점은행제				

<표 27> 송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송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대학교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하동)				
대표전화	062-360-5700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김○○	사학연금	정규직	무	
직원	고○○	사학연금	정규직	유	
강좌명 (18.10.현재)	NPL(부실채권) 기초과정, NPL(부실채권) 중급과정, 고미술품의 이해, 나는 오카리나 연주자, 남도답사도보여행, 동화구연지도사(중급반), 동화구연지도사(초급반), 리본공예, 명품CEO아카데미, 미술심리지도사(초급), 민화, 스피치지도사 3급, 예쁜글씨(POP), 창의인성 독서치료, 특수아동지도사, 펠트&인형공예, 플루트(기초반) (학생, 교직원), 학점은행제				

〈표 28〉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국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대학교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대표전화	062-530-3876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이○○	공무원연금	정규직	무	
부원장	이○○	공무원연금	정규직	무	
행정실장	위○○	공무원연금	정규직	무	
행정팀장	강○○	공무원연금	정규직	무	
직원	김○○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무	
직원	여○○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무	
직원	윤○○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무	휴직
직원	한○○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유	
강좌명 (18.10.현재)	1급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 21세기 최고지도자, AI기초수학, AI기초수학2, AI기초프로그래밍, CNN영어 & 세계여행, pop와 캘리그래피, 고품격스피치매너, 기계학습입문, 기초부터 배우는 연필인물화, 김영창하모니카, 노후준비와 부동산성공투자, 대체의학과 건강관리, 도심속의 양봉대학, 동화구연과 독서지도, 레크리에이션 1급지도사, 문예창작(기초), 문예창작(심화), 문인화, 미술심리상담사1급(임상실습), 미술치료, 민화와채색화, 복지원예사(원예치료사), 부동산경매 이론 및 실전(기초), 사진촬영 이론과 실기(기초), 사진촬영 이론과 실기(심화), 사진촬영 이론과 실기(창작), 색연필로 그리는 수채보태니컬아트 취미반, 서예(한글/한문), 성공부동산재테크, 성악아카데미, 수필창작, 스피치리더스클럽, 심리상담사2급(심화), 심미안(審美眼) 아카데미, 심층학습, 약선요리지도사, 약용식물관리사, 영상처리및실습, 오카리나2급지도사, 우쿨렐레 음악지도사 2급, 웰빙음식, 유통경영자 과정, 음성인식 및 실습, 자연어처리, 즐거운생활, 천연비누&화장품 전문가 과정, 청소년 진로지도사, 프리저브드플라워&화훼장식, 플라워 디자인 지도사, 한국화, 한방꽃차소믈리에 3급 자격과정, 흙백 남도의 멋과 흥에 취해볼까요!!, 힐링플랜테리어전문가, 학점은행계				

<표 29>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대학교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홀 1층				
대표전화	062-230-7700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최○○	사학연금	정규직	무	
팀장	이 ○○	사학연금	정규직	무	
직원	남○○	사학연금	정규직	유	
직원	박○○	국민연금	계약직	유	
강좌명 (18.10.현재)	<p>3급푸드예술심리상담사, DIY가구제작 입문, NPL투자비법과 경공매, PA 2급 지도사(유아 영어 피아노 지도사), Social Dance(리듬댄스), 가요난타-북치고 장구치고(초급), 감성 영어그림책 전문가, 고수의 토지 및 상가투자전략, 공경매를 통한 임대업 창업(민사소송실무와 입지(상권)분석), 공예교육전문 지도자과정(디자인아트공예지도사), 관상과 손금(한순간에 상대를 파악하는 지인술), 광목쟁이 여우비야생화 자수, 기문사주학(고급. 실전풀이 원리론), 기문풍수지리학(기문천성이기), 기초부터 배우는 연필초상화, 김병조의 청주판 명심보감, 나는 오카리나 연주자(오카리나지도사 2급), 남도답사도보여행, 노인미술심리상담사, 댄스스포츠(Cha cha cha), 댄스스포츠(라틴), 돈보다 귀한 예술(고전문학)에 빚댄 삶의 지혜, 드론 조종자격 국가자격증과정, 명소 탐방을 통한 사진 따라잡기, 문인화(사군자) 및 시(詩) · 서(書) · 화(畵) 전문가 과정, 문학산책, 미술심리상담사 2급, 바리스타 양성과정, 방과 후 토탈 공예 지도사, 보태니컬아트 (식물 세밀화.꽃그림), 부동산경매 이론 및 실전(기초반), 부동산경매 이론과 실무(전문가과정), 부동산경매사관학교(최고전문가과정),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전문가과정, 부동산투자 실무(도시계획과 토지개발사례연습), 불안전문 심리상담사 자격과정, 사진 촬영 기법, 사진예술, 사진예술 촬영전문반, 산야초힐링, 색채심리 상담사(고급), 색채심리 상담사(기초), 생활수맥과 풍수학(물탐사 자격), 생활요가, 생활운동&자세교정지도사(자연치유&대체의학 실전), 생활자기, 서예, 수맥환경과 힐링문화(수맥탐사지도사 2.3급), 수익형부동산 투자실전, 수채화, 수필.소설 창작 입문, 스마트워커로 업무처리하는 전문가과정, 스피치지도사(성공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시의 이해와 창작, 신체 디자인 운동, 실버인지놀이지도사과정, 실전입체 pop(예쁜 글씨), 실전대비 경매 특별과정, 심신치유요가, 아코</p>				

	<p>디언(초,중급), 알기쉬운 사주학, 약용식물자원관리, 약초 건강이야기, 어린이책 스토리텔러 3급, 여행영어(초급반), 여행일본어, 역사속으로 들어가는 한시와 시조 여행, 역학심리상담사 자격증반(동양천문학·자미두수), 와인의 세계, 요가지도자과정(3급), 우리춤체조, 원예복지지도사, 유통경영자, 유화(정물,풍경), 음악치료 자격증반Ⅱ(중급)(임상음악전문가/음악심리지도사), 음악치료 자격증반Ⅲ(고급Ⅰ) (임상음악전문가/음악심리지도사), 의상과 의류리폼(수선)과정,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인문학으로 본 고전 대학(大學), 재즈피아노, 중국어, 차밍, 웰빙댄스 1급 지도자&음악레크리에이션1급지도자 통합과정, 천자문. 명심보감. 손자병법(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처세술 리더십), 철학과 함께하는 명상여행, 체형교정 필라테스, 캘리그라피, 커피에서 카페까지, 클래식기타, 테니스, 통기타, 팝아트초상화, 프랑스 자수, 플루트, 피아노 개인레슨, 하모니카, 한국화, 한방약차 &천연발효식초요법(허브티바리스타 자격과정), 한자·한문지도사, 행복한 오페라 신나는 뮤지컬, 현대생활과 현공풍수, 화장품 산업전문가(교육강사 2급), 화훼조형디자인(기초 플로리스트), 힐링 음치클리닉, 학점은행제</p>
--	---

<표 30> 조선이공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조선이공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전문대학	학교유형	전문대학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서석동)				
대표전화	062-230-8092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김○○	사학연금	정규직	무	
팀장	이○○	사학연금	정규직	유	
강좌명 (18.10.현재)	CS리더스관리사(국가공인), Think Wise 마인드맵, 골프, 기업서비스 강사 양성과정, 노인건강운동지도사, 노인심리상담사, 드론 교육지도사 1급, 드론 교육지도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발레필라테스, 법정의 무교육강사, 병원+뷰티코디네이터, 병원코디네이터, 세미퍼머넌트 최고위 과정, 우리춤체조, 웃음치료사+레크레이션, 유아필라테스, 인성 교육지도사, 전통민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 조종자 과정, 쥘트와자수, 탁월한 삶을 위한 리더십 코칭, 필라테스, 학점은행제				

<표 31>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현황

기관명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설립구분	사립
학교종류	대학	학교유형	대학교	기관분류	학교 부설
기관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서봉동)				
대표전화	062-380-8530				
보직	성명	연금가입	고용형태	평생교육사 유무	비고
원장	장○○	사학연금	정규직	무	
직원					
강좌명 (18.10.현재)	3D프린팅마스터, MOS(엑셀, 파워포인트),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국 외여행인솔자 양성, 원예치료사(복지원예사), 교육연극지도사, 미술 심리상담사, 연극뮤지컬지도사, 캘리그래피, 동양화지도사, 아동요 리지도사, 커피바리스타, 코딩 강사양성, 3D프린팅 강사양성, 드론 강사양성, 로봇 강사양성, 아동핸드크래프트, 예술사진, 스틸라이프, 사진편집 및 디자인				

(5) 도서관¹⁷⁾

<표 32> 도서관 현황

상록도서관 (062-350-4580)	12	정규직	무	어린이독서클럽, 그림책공연, 환경아 놀 자, 독서토론, 북스타드 북모학교, 동화 구연지도사, 교양한문교실, 어린이명화 갤러리, 어린이고전놀이터, 책놀이, 캘리 그래피, 인문독서아카데미, 독서연극교 실, 토탈공예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062-350-4584)	3	정규직	무	북스타트, 찾아가는 여름독서교실
서구공공도서관 (062-654-4306)	2	비정규직	무	책문화데이
양동작은도서관 (062-351-3101)	1	비	무	감성디자인캘리그래피, 어린이한국사, 오순도순뜨개방
화정4동작은도서관 (062-384-4443)	1	비	무	한국사, 우쿨렐레, 생활영어, 모자문화 답사반, 압화, 문학기행

17) 작은도서관은 광주광역시 5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들이며 관할 구청에 공문을 보내어 관할 도서관과에서 보내준 자료이다. 작은도서관은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져 있고, 공립은 관할구청에서 일정금액 지원을 하는 곳이며, 사립은 개인이 작은도서관 신고를 하여 도서관을 개관한 도서관이다. 그래서 관할 구청에서는 자신들이 사업금액을 지불한 도서관(공립) 도서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조사에 응해주었다. 사립은 각 구청의 통합 도서관 서비스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았으나(각 구별로 작은도서관이 100개가 넘는 구도 있다.

금호2동작은도서관 (062-675-4504)	1	비	무	창의체험수학교실, 창의력쑥쑥보드게임, 인물찾아떠나는역사여행, 그림책으로 스토리텔링
동천동작은도서관 (062-521-2990)	1	비	무	창의역사교실, 책놀이터, 논술교실, 우쿨렐레, 창의수학, 도탈공예, 글씨교실, 스크래치코딩or드론수업
풍암호수작은도서관 (062-655-7755)	1	비	무	책을발표하다, 리딩톡톡, 리딩보드놀이 로익히는한국사, 처음만나는 '자연스케치'
서창한옥작은도서관 (062-385-9075)	1	비	무	감성손글씨, 힐링원예치료
운남도서관	19	15/4	무	그림책이랑놀자,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놀이,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지도로 떠나는 세계여행, 술술풀리는 한국사, 이야기가 있는 종이접기, 영어그림책과 스토리텔링, 행복나눔시낭송, 그림같은 한국캘리그래피, 명심보감이한시와만나면, 서양고대문화사, 한눈에 보는 중국사
일곡도서관	16	11/5	무	그림책 놀이터교실, 그림책 여행 교실, 동화 읽어주는 책놀이 교실, 신나게 맛있게 그림책 남남,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고전의 비밀을 찾아라,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여행, 술술 넘어가는 역사여행, 독서지도사, 마음을 여는 수필 쓰기 교실, 캘리그래피, 생활영어회화반, 프랑스 자수, 도전한글교실
남구문화정보도서관	8	정규직8	무	동화책 읽어주세요, 책놀이 꼬마요리사, 영어동화 읽어주기, 알록달록 도탈공예, 엄마가 가르쳐주는 역사와 지리
광주남구푸른길 도서관	7	정규직4/ 비정규직 3	무	까꿍! 우리아기 발달놀이, 오물딱 조물딱 만들기 놀이, 그림책과 함께 종이접기, 꼼지락 그림책 읽기, 신나는 리딩푸드, 책이랑과학이랑 역사야 놀자, 캘리그래피
청소년도서관	8	정규직7 비정규직 1	무	그림책 읽어주세요, 엄마랑책놀이, 쑥쑥 창의놀이, 톡톡신나는 독서토론놀이, 행복한 꼬마요리사, 인물로만나는 역사북아트, 청소년을 위한 실천하는 인문학, 부모코칭
남구실버작은도서관	1	정 규 직	유	건강을 찾아라, 공예반, 유치부 독서반
진월작은도서관	2	비정규직	유	독서 관련 프로그램 6개 운영

무등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1	정규직	유	학문, 영어, 피아노, 댄스, 문화 체험 등
무지개작은도서관	6	비정규직	유(1명)	독서토론 운영
민들레작은도서관	1	정규직	유	책으로 떠나는 여행, 인문학교실, 동아리 모임
노대장수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노들행복작은도서관	2	비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물빛공원작은도서관	8	정규직1/ 비정규직 7	무	영어그림책놀이, 세계음식여행, 그림책워크숍 외
방림2동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방젯골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양림동역사문화 작은도서관	1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양지작은도서관	6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월산5동작은도서관	2	비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푸른길작은도서관	3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효덕동작은도서관	2	비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18민주인권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단지솔빛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까운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보험존 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금당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기린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꿈꾸는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꿈나래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꿈사랑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낮은올타리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늘푸른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달피마을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두란노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로템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발림휴먼시아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백운3반딧불 작은도서관	1	비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백운우방까치동지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베라체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과나무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랑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록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천년뜨락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담에픽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큰골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풍경채1차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희나눔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희망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흰구름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힐스테이트백운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천년나무4단지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꿈드림북카페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효천행복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브라운스톤효천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새마을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각쟁이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송화마을3단지 작은도서관	3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송화마을7단지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송화마을휴먼시아6단 지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순돌이네책방 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숲속작은도서관	4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오손도손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월산상록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일풍경채에듀파 크2단지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품생태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책문화공간봄 작은도서관	2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천년나무꿈 작은도서관	1	정규직	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광주동구 계림꿈나무도서관 062)608-3920	2	정규직	무	독서문화프로그램-4건, 평생학습프로그램-5건	공공
지산2동 작은도서관 062)225-2123	0	비정규직	무	독서문화프로그램-3건, 평생학습프로그램-3건	공립
학운동 작은도서관 062)608-3921	1	정규직	무	독서문화프로그램-1건, 평생학습프로그램-3건	공립
지원2동 작은도서관 062)608-3922	1	정규직	무	독서문화프로그램-1건, 평생학습프로그램-4건	공립
장덕도서관 (062-960-3997)	12	정규직	무	캘리그래피, 리딩푸드놀이지도사, 생활 영어회화, 창의력글쓰기, 어린이영어동 화읽기, 어린이공예교실, 창의사고력보 드게임, 손뜨개,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 책 읽어주기	
이야기꽃도서관 (062-960-6818)	13	12/1	무	그림책이야기,세대간을 잇다, 청소년그 림책활동가, 팝업그림책, 팝아트, 그림 책 놀이터, 그림책캐릭터교육, 창작그림 책 '색감각'	
첨단도서관 (062-960-8298)	11	정규직	무	캘리그래피, 솔로몬과학교실, 한국사 이 야기, 나를 찾아떠나는 그림책 이야기, 손뜨개, 보드게임, 동화구연	

신가도서관 (062-960-8515)	12	10/2	무	캘리그래피, 한국화일러스트, 민화, 독서마인드맵지도사, 책과 함께하는 창의조립나라, 한국사, 영어야 놀자
운남어린이도서관 (062-960-8302)	10	9/1	무	초등저학년글쓰기, 스토리북과 함께하는 영어(초등, 유치), 영어그림책 역할극놀이, 동화구연, 행복한 엄마영어학교
우산동 작은도서관 (062-960-7667)	1	정규직	무	동화세상, 그림책과 함께하는 놀이, 역사테마동화, 도서관 견학하기, 이젤과 미술, 신나는 역사탐험, 글로벌 영어, 신기한 수학, 독서 글쓰기, 나만의 천연화장품, 생활 중국어, 앵그리 독서모임, 톡톡영어야 놀자,
침단빛누리 작은도서관 (062-960-7713)	4	1/3	무	시와 캘리그래피, 창의력쑥쑥 그림책 그림, 중국어 첫걸음, 역사여행을 떠나요
혜음마루 작은도서관 (062-952-9612)	2	정규직	무	역사하브루타 학습코칭지도사 2급(성인), 그림책 읽고 보드로 놀고(초등)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출 판 일 : 2018년 12월 26일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 김철진

연 구 원 - 김동일, 김나예, 윤희향, 김소정

보조연구원 - 김민정, 김혜리, 김은하

발 행 인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발 행 처 : 광주광역시의회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 화 : 062)613-5070~73

『본 용역보고서의 저작권은 광주광역시의회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전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